10~13세기 漂流民 送還體制를 통해 본 동아시아 교통권의 구조와 특성*

전 영 섭**

－목 차－

Ⅰ. 머리말
Ⅱ. 표류민 송환체제의 내용 분석
1. 표류의 실태와 특징
2. 使臣의 표류와 송환 절차
3. 일반민의 표류와 송환 절차
Ⅲ. 송환체제에 보이는 동아시아 교통권의 구조와 특성
Ⅳ. 맺음말

개 요

본고는 10~13세기 동아시아 교역권에서 전개되고 있는 여러 특징 가운데 표류의 실태와 송환체제를 분석하여 이 시기 형성된 교통권의 구조와 특성을 구명하였다. 표류민의 발생과 송환은 이 시기 동아시아 교역체제와 깊은 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검토는 해상 네트워크의 형성, 해양으로 진출한 사람들의 구성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국의 대외교역 관리의 차이점, 나아가 동아시아 교통권의 구조와 특성까지도 구명할 수 있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영역이다.

이 시기 동아시아 교역권에서 발생한 표류민의 신분은 使臣, 상인(海商)·僧侶, 軍人, 家奴, 漁夫 등 구성이 다양하였다. 그런데 표류민의 신분 구성은 12세기 중후반을 경계로 使臣에서 상인으로 그 중심이 이동되었

* 이 논문은 2008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08-361-B00001).

**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HK연구교수(junygsp@hanmail.net)

다. 이러한 표류민 신분의 중심이동은 이 시기 동아시아 대외교역시스템의 互市體制(公貿易體制/國家管理體制)에서 市舶司體制 私貿易體制民間交易體制)로의 전환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었다.

송대 표류사신의 송환은 "㉠선박의 漂着→㉡官의 救濟→㉢訊問·조사(❶표착사신의 上表 ❷표실 공물 처리)→㉣담당관의 중앙으로의 보고→㉤중앙에서의 사신 파견→㉥存撫와 上京 지시→㉦의복·예물 등 지급→㉧송환→㉨(사신) 本國으로 詔書 지급"으로 이루어져 있었다.고려의 표류사신에 대한 조처는 '㉡官의 救濟', '㉥存撫와 上京 지시', '㉦의복·예물 등 지급'이, 일본의 경우에는 '㉢訊問·조사와 '㉣담당관의 중앙으로의 보고'가 시행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송대 표류민의 송환은 "㉮선박의 漂着→㉯해당관청(市舶司)에 보고→㉰官의 救濟→㉱市舶司로 이관→㉲인원·화물의 등록과 조사·처리(❶물품의 보관·榷買 및 分買, 반환 ❷세금부과 ❸시박사의 勘驗 ❹違制失條例 및 防守·盜縱·詐冒斷罪法 적용 등)→㉳담당관(시박사)의 중앙으로의 보고→㉴存撫(存問) 및 식량 지급→㉵渡海糧 지급→㉶候便에 의한 송환"이라는 절차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었다.송의 표류민에 대한 송환은 지방에 위임되어 있었고,그것을 전담한 것은 대외섭외창구인 明州의 市舶司였다. 고려에서는 표류민을 송환할 때 '㉶候便에 의한 송환'방식을 취하지 않고 지방관이 직접 護送하였고, 표류민 송환 조처가 중앙의 명령에 의해 시행되고 있었다. 일본에서 표류민 송환은 종래 중앙에서 주도하던 것이 1031년을 기점으로 지방으로 위임되었고,이후 표류민의 송환은 對馬島官이 주도하였다.

당시 표류민 송환에서 이용된 송·고려 간의 교통로는 남방항로(明州—黃海—黑山道—西海岸—禮成江—急水門—碧瀾渡—開京)와 일치하였고, 고려와 일본 간에는 耽羅—金州—對馬島라는 루트가 형성되어 있었다.

주제어 : 표류민, 송환체제, 동아시아교통권, 명주, 금주, 대마도

Ⅰ. 머리말

동아시아에서 10~13세기는 激變期였다. 이 가운데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변화로서 주목되는 것은 문화권이 해체되고 새로이 통상을 매개로 한 교역권[통상권])이 형성된 점이다. 이 시기 동아시아 교역권의 형성은 정치·경제의 '내륙(陸域)권에서 해륙(海域)권으로'의 이동, 그에 따른 해양에 대한 인식의 변화라는 국가·사회 전체의 패러다임의 전환과 맞물려 있다.

한편, 이 시기 바다를 매개로 형성된 이러한 교역권은 동아시아가 一國의 범주를 넘어 지역·광역으로 연결된 경제통합메커니즘이 작동하였고,[1] 그것은 다름 아닌 '海上교역체제'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이렇게 성립된 해상교역체제는 宋·高麗와 日本 삼국을 연결하는 해상교역로(航路)의 형성, 해항도시간 네트워크의 성립, 市舶司體制라는 하나의 교역시스템의 작동이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2]

이처럼 이 시기 동아시아 해역권에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역사적 현상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이 시기 동아시아 해역세계가 海上을 통한 국가·민간 차원의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된 결과일 것이지만, 그것을 초래한 원동력 내지 추진 주체는 海港도시를 거점으로 무역활동에 종사한 海商이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특징을 보이는 이 시기 국제관계사에 대한 연구경향은

1) 전영섭, 「10~13세기 동아시아 교역시스템의 추이와 海商 정책-宋·高麗·日本의 海商 관리규정 비교-」, 『역사와 세계』 36, 2009, 2쪽.
2) 전영섭, 「10~13세기 동아시아교역권의 성립과 海商활동-海港都市·國家의 拮抗관계와 관련하여-」, 『해항도시문화교섭학』 3, 2010, 4~10쪽.

크게 정치적 관계를 중시한 견해(책봉체제론, 조공관계론, 조공책봉관계론), 무역관계를 중시한 견해(무역사, 상업사), 문화교섭사 등으로 나뉘고 그 성과도 적지 않다.[3] 그러나 종래의 연구경향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는 이 시기 형성된 해상교역권 또는 해상교역체제의 구조·성격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고,[4] 둘째는 첫째와 관련되지만, 연구의 지나친 파편화 현상이며, 셋째는 본고에서 다루는 漂流民의 송환체제에 대한 관심의 부족이다. 이 가운데 마지막에 있는 표류민의 송환체제는 이 시기 동아시아 해상교역체제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검토는 이에 대한 검토는 해상 네트워크의 형성, 해양으로 진출한 사람들의 구성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국의 대외교역 관리의 차이점, 나아가 동아시아 교통권의 구조와 특성까지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표류민에 대한 연구성과는 다른 주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5] 본고는 필자의 이러한 시각을 기초로

---

3) 10세기 이후 동아시아 국제관계사에 대한 연구경향과 성과 및 문제점에 대하여는 전영섭, 앞의 논문(2010) 참조.

4) 기존의 연구는 10세기를 전후하여 동아시아의 국제관계가 문화권에서 교역권 또는 해상교역체제로 전환되었음을 인정한 위에서 교류의 형태 또는 전개과정 등을 구명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틀이 문물교류의 실상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작업인 것은 사실이다. 다만 그러한 교류에 내재하는 구조, 다시 말하면 교역권 또는 교역체제에 공통하는 원리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

5) 이 시기 동아시아 해역권에서 발생한 표류민을 다룬 국내의 논고는 이승민, 「고려전·중기 동북아시아 해역에서의 표류민 송환과 국제관계」, 『가톨릭대석사학위논문』, 2007 ; 裵淑姬, 「宋代 東亞 海域上 漂流民의 發生과 送還」, 『中國史硏究』 65, 2010이 있고, 중국에는 姚禮群, 「宋代明州對高麗漂流民的救援措施」, 『韓國硏究』 2, 1995가 있으며, 일본에는 山內晉次, 「古代における朝鮮半島漂流民の送還をめぐって」, 『歷史科學』 122, 1990이 있다. 이들 논고는 제목에서 보듯이 각각 고려·송·일본을 분리해서 다루고 있고, 본고와 같이 당해시기 韓中日 전체를 포괄하거나 체제론적인 접근은 보이지 않는다[참고로 韓中日 학계에서 10세기 이후 이 분야의 연구는 15~18세

기존의 부진한 연구성과를 보완하는 의미에서 10~13세기 동아시아 교역권에서 발생한 표류의 실태와 송환체제를 분석하여 이 시기 형성된 교통권의 구조와 특성을 구명하고자 한다.

Ⅱ. 표류민 송환체제의 내용 분석

1. 표류의 실태와 특징

아래의 [표]는 10~13세기 동아시아 해역권에서 발생한 총 70건의 표류사례를 시기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 10~13세기 高麗·宋·日本의 표류 실태

連番	年·月·日	出身地/國	人名	身分/規模	目的	漂流形態	漂着地/國	送還地/國	措處	內容	出處
①	909 開平3	後梁	不明	不明	朝貢	漂沒	不明	無	無	是時 楊氏據江·淮 故聞中與中國隔越 審知每歲朝貢 泛海至登萊抵岸 往復頗有風水之患 漂沒者十四五	『舊五代史』卷134, 王審知傳
		後梁	不明	使者	朝貢	覆溺	不明	無	無	是時 楊行密據有江淮 審知歲遣使泛海 自登·萊朝貢於梁 使者入海 覆溺常十三四	『新五代史』卷68, 閩王世家
②	910 開平4	後梁	司馬鄴	使	使行	漂溺	耽羅國	無	無	司馬鄴…開平元年 拜右武衛上將軍 三年 使於兩浙…出東海 至於登·萊 而揚州諸步多賊船 過者不敢循岸 必高帆遠引海中 謂之入陽 以故多損敗 鄴	『舊五代史』卷20, 司馬鄴傳

기 즉 조선·명청 시대에 집중되어 있다. 국내의 논고에는 李薰, 『朝鮮後期 漂流民과 韓日關係』, 國學資料院, 2000 ; 朴元鎬, 「明代 朝鮮 漂流民의 送還 節次와 情報傳達」, 『明淸史硏究』 24, 2003 등이 있고, 중국의 대표적인 연구자는 劉序楓이다(그의 논고는 적지 않지만, 국내에 게재된 논문을 들면 劉序楓, 「淸代 中國의 外國人漂流民의 救助와 送還에 대하여—朝鮮人과 日本人의 사례를 중심으로—」, 『東北亞歷史論叢』 28, 東北亞歷史財團, 2010이 있다)].

										在海逾年 漂至耽羅國 一行俱溺	
③	927 天成2·11	契丹	裟姑 麻咄	使/35	歸還	遇風	登州/ 後唐	無	無	契丹使裟姑麻咄等三十五人來聘 萱差將軍崔堅 伴送麻咄等 航海北行 遇風至唐登州 悉被戮死	『三國史記』卷50, 甄萱傳
④	929 延長7· 5· 17	新羅	不明	不明	交易	瓢蕩	對馬下 縣郡	對馬嶋	給粮食 ·送皈	先是 去正月十三日 新羅交易海藻於貪羅嶋之□ 瓢蕩著對馬下縣郡 嶋守經國加安存給粮食 并差加擬通事長岑望通 撿非違使秦滋景等 送皈全州	『扶桑略記』卷24
⑤	942 天慶5·11· 15	新羅	不明	7艘	不明	寄着	隱岐國	不明	報告	出雲國言上隱岐國新羅舟七艘寄着之由	『日本紀略』後篇2
⑥	963 乾德1·9 5	高麗	時贊	使/90餘	入貢	値大風船 破溺死	登州	無	勞卹	登州言 高麗國王昭 遣使時贊等入貢 涉海値大風 船破從人溺死者九十餘人 贊僅而獲免 詔勞卹之	『長編』卷4
	963 光宗14·12	宋	時贊	冊命使/ 90	使行	遇風	高麗	不明	厚勞	宋 遣冊命使時贊 來在海遇風 溺死者九十人 贊獨免 王特厚勞之	『高麗史』卷2
⑦	984 永觀2·4·3	高麗	船	人	不明	來著	筑前國早 良郡	不明	不明	高麗人船來著筑前國早良郡事	『小記目錄』卷16, 異朝事
⑧	988 端拱1· 4·24	宋	呂端	使	歸還	遇風濤帆 檣折	高麗	不明	蠲其所貸	遣考功員外郎兼侍御史知雜事呂端·起居舍人鉅野呂祐之使高麗 假內庫錢五十萬以辦裝 還 遇風濤 帆檣折舟人大恐 端恬然讀書不輟祐之悉取所得貨沈之 迺止詔蠲其所貸	『長編』卷29
⑨	993 淳化4	高麗	元證衍	護送使	還使 護送	値風損船 溺物	安香浦口	登州	遣還,賜 衣·銀器 ·羊	先是 式等復命 治遣使元證衍送之 證衍至安香浦口 値風損船 溺所齎物 詔登州給證衍文據遣還 仍賜治衣段二百匹·銀器二百兩·羊五十口	『宋史』卷487, 高麗傳
⑩	996 長德2·5· 19	高麗	不明	人	不明	寄來	石見國· 但馬國	不明	造船· 給粮· 還國	高麗國人寄石見國 其車諸卿定申 延喜年中異國人來但馬國 造船給粮還遣本國 依彼例給粮可返遣之由 定申了	『小右記』
⑪	1000 咸平3·10 ·庚午	高麗	池達	民/8	不明	海風壞船	覲縣	登州	給貲糧 ·歸國	時明州又言 高麗國民池達等八人 以海風壞船 漂至鄞縣 詔付登州 給貲糧 俟便遣歸其國	『長編』卷47
⑫	1002 長保4·7· 16	高麗	不明	人/4	不明	流來	不明	不明	給宣旨	參衙 而左少史爲孝一人候 仍退出□詣左府 詣東院 下給宣旨二枚 大宰府申流來高麗人四人文一枚 又申參來同國人二十人文枚	『權記』
⑬	1004 寬弘1·3·7	于陵島	不明	人/11	不明	上	因幡國	不明	報告	因幡國言上于陵嶋人十一人事等 定文在別	『權記』

⑭	1017 天禧1·11·癸亥	高麗	不明	使	入謝	風漂舟回	無	無	無	初 郭元之還 詢卽遣使入謝 道海風漂舟回 及是乃至	『長編』卷90
⑮	1019 寬仁3·6·21	高麗	未斤達	人	歸高麗中	遭逆風來	筑前國	不明	禁固·訊問	高麗人未斤達 五月廿九日 到着筑前國志摩郡 申云 去年三月十六日 從彼國康州 隨身米千石 參着京都 六月十五日罷歸之間 被放逆風 去月八日到大宋國明州 今年五月廿四日罷歸本國之間 遭逆風來者 依有大疑 禁固今訊問者	『小右記』
⑯	1019 天禧3·9·辛巳	高麗	崔元滔	使	進貢	遭風覆舟·漂失貢物·溺死	秦王水口	不明	存撫	登州言 高麗 遣禮賓卿崔元信來貢 元信至秦王水口 遭風覆舟 漂失貢物 人多溺死 詔遣中使存撫之 又令登州 凡使人(入使)物色 官給脚乘 津遣赴京	『長編』卷94
⑰	1019 寬仁3·12·30	高麗	不明	使·人/30	不明	漂沒	筑前國	不明	問安東都護	戊剋許 冒雨前代納言俊賢 卿送書狀云 只今自大宰府 言上間高麗使日記 自對馬 嶋着筑前國 彼國人卅人 乘船已漂沒 二艘僅到着也 先日案令出見 流來虜人等使 申 件者高麗人而不知其來 由者 此尤可疑 問安東都 護…	『小右記』
⑱	1020 天禧4·2·24	夾骨島/高麗	闍達	民	不明	風漂	定海縣	明州	存問·給度海糧·遣還	明州言 高麗夾骨島民闍達 以風漂 舟至定海縣岸 詔本州存問 給度海糧遣還 自今有此類 準例 給遣訖以聞	『長編』卷95
⑲	1029 顯宗20·7·28	耽羅	貞一	民/21	不明	漂風	東南僊遠島	日本	情報傳達	耽羅民貞一等 還自日本 初 貞一等二十一人 泛海漂風 到東南極遠島 島人長大 遍體生毛 語言殊異 坊留七月 貞一等七人 竊小船 東北至 日本那沙府 乃得生還	『高麗史』卷5
⑳	1031 長元4·2·19	耽羅嶋	不明	人/8	不明	流來	不明	不明	給粮·還遣	頭弁持來齊宮寮返解文 大宰府解文【耽羅嶋人八人流來事去年解文 而關忌不被下仰云]…異國人無事疑者 不經言上 給粮可還却之由 格文側所覺也 近代尙經言上 如此解文已無疑殆 給粮還遣尤宜	『小右記』
	1031 長元4·2·24	不明	伯達	人/9	不明	流來	不明	不明	給粮·廻却	流來者給粮可從廻却之事 可賜官符于大宰府事 但流來者八人 以自筆書名 而勘問日記 問伯達□□□八人外也者 事有相違 可裁官府歟 雖申其由 無指報者 今一度可申案內之由示含畢	『小右記』
	1031 長元4·2·	耽羅嶋	伯達	人/9	不明	流髣	不明	不明	調査	耽羅嶋流來者八人 其外有 曰伯達 廻却之官符可載相	『小右記』

	26									違事 尤可然者 卽宣下	
㉑	1034 長元7·3	高麗	不明	人	不明	流來	大隅國	不明	慰勞·返遣	某日 對馬嶋言上 高麗人流來大隅國 厚加慰勞返遣之	『日本紀略』後篇14
㉒	1036 靖宗2·7·16	高麗	謙俊	人/11	不明	漂流	不明	日本國	歸	日本國 歸我漂流人謙俊等十一人	『高麗史』卷6
㉓	1049 文宗3·11·29	高麗	金孝	人/20	不明	飄風	對馬島	對馬島	押送	東南海船兵都部署司奏 日本對馬島官 遣首領明任等押送我國飄風人金孝等二十人 到金州 賜明任等禮物有差	『高麗史』卷7
㉔	1056~1063 嘉祐中	屯羅島	不明	人/30	不明	風飄泊岸	崑山縣	不明	訊問	崑山縣海上 有一船 桅折風飄泊岸 船中三十餘人 衣冠如唐人 繫紅鞓角帶 短皂布衫 見人皆慟哭 語言不可曉 試令書字 亦不可讀 行則相綴 如雁行…乃唐天祐中 告授屯羅島首領陪戎副尉制 又有一書 乃是上高麗表 亦稱屯羅島 皆用漢字…時贊善大夫韓正諸縣令…	『吳郡志』卷46, 異聞
㉕	1060 文宗14·7·27	禮成江	位孝男	民	不明	飄風	不明	對馬島	歸	東南海船兵都部署奏 對馬島 歸我飄風人禮成江民位孝男 王賜使者禮物優厚	『高麗史』卷8
㉖	1071 熙寧4·5·22	高麗	金悌	使/118	脩貢	風飄	通州海門縣	不明	不明	大海【去海門縣 東八十里 瀧水燕談 熙寧四年 高麗遣使脩貢 將由四明登岸 爲海風飄新港 先以狀致通州云 望北極以乘槎 指桃源而迷路 誤到仙鄉 其同行朴寅亮詩尤精 如四州龜山詩 門前客棹洪濤急 竹下僧基白日閒】	『方輿勝覽』卷45, 通州 山川 大海
		高麗	金悌	使/118	脩貢	風飄	通州海門縣	不明	不明	高麗 海外諸夷中 最好儒學…熙寧四年 始復遣使脩貢 因泉州黃愼者爲向導 將由四明登岸 比至 爲海風飄至通州海門縣新港	『瀧水燕談錄』卷9, 雜錄
㉗	1076 熙寧9·9·2	高麗	幸忠	水軍/20	不明	遇風	秀州華亭縣	不明	訊問,居官舍·給食	權發遣兩浙轉運副使蘇瀾言秀州華亭縣有外國幸忠等二十人至靑墩·南陽 語難辨問 令書字 與中國同 稱高內國 以語音宜是高麗國人及將文字參驗辨認 因乘船遇風 竄泊海岸 止說金堤郡水軍隊納米事 詔秀州 如參驗實非姦細 卽居以官舍 給食 候有本國使人 入朝取旨其後 王徽使至 因賜帛遣歸	『長編』卷277
㉘	1078 文宗32·9·1	耽羅	高羆	民/18	不明	飄風	不明	日本國	歸	日本國 歸耽羅飄風民高羆等十八人	『高麗史』卷9
㉙	1079	高麗	安光	商人/44	不明	飄風	不明	日本國	歸	日本國 歸我飄風商人安光	『高麗史』卷9

	文宗33・9									等四十四人	
㉙	1079 元豊2	高麗	柳洪	使	來謝	遇風失所貢物	不明	不明	不明	遣王舜封挾醫往診治 徽又使柳洪來謝 海中遇風 失所貢物	『宋史』卷487, 高麗傳
	1080 元豊3・1・乙酉	高麗	柳洪	進奉使	進貢	遇風飄失貢物	不明	不明	開釋罪戾等	高麗進奉使柳洪等 以海行遇風 飄失貢物 上表自劾 詔降敕書 諭以風波不虞 開釋罪戾之意 今據見存物投進 仍詔明州先借高麗主船兵工 劾罪以聞 館伴高麗使所言 使人以大行太皇太后在殯 欲入見日 繫墨帶 上批 已易吉服 在理難更再變 若使人實有稟請 委王存等 妙順開諭止之	『長編』卷302
	1080 文宗34	高麗	柳洪	奉使	進貢	遇颶風幾履舟	不明	不明	帝勑王勿問・王乃釋	(朴寅亮)與戶部尙書柳洪 奉使如宋 至浙江 遇颶風 幾履舟及至宋 計所貢方物 失亡殆半 帝勑王勿問 王乃釋洪等	『高麗史』卷95, 寅亮傳
㉚	1078~1085 元豊中	託羅國	崔擧	人	不明	因風失船飄流	泉州	不明	給與沿路口券・給與食物	臣昨任明州者 有高麗國界託羅國人崔擧等 因風失船飄流至泉州界 得捕漁船 援救 全度 從此 隨捕漁船 同力採捕 得魚自給 後于泉州自陳 願來明州 候有便船 却歸本國 泉州 給與沿路口券 差人押來 臣尋爲置酒食犒設 送在僧寺安泊 逐日給與食物 仍五日 一次別設酒食 具狀奏聞…	『元豊類藁』卷32, 劄子 存恤外國人請著爲令
㉜	1078~1085 元豊中	高麗	不明	使人	不明	大風失道	松門	不明	不明	公諱量 字子平 徐氏…元豊中 入武學…調台州海內松門巡檢 高麗遣斯朝 大風失道 飄至松門海上 使人問塗 將出天台以西…僉是 轉四明海道 徑易商旅所安行也 獅子圖之 夷人愧去如公言	『北山小集』卷34, 行狀 故武功大夫昭州團練使贈鎭騎尉徐公(量)行狀
㉝	1088 宣宗5・5・6	羅州	楊福	人/23	不明	飄風	不明	宋明州	歸	宋明州歸我羅州飄風人楊福等男女二十三人	『高麗史』卷10
㉞	1088 宣宗5・7	耽羅	用叶	人/10	不明	飄風	不明	宋明州	歸	宋明州歸我耽羅飄風人用叶等十人	『高麗史』卷10
㉟	1089 宣宗6・8・13	高麗	李勤甫	人/24	不明	飄風	不明	宋明州	歸	宋明州歸我飄風人李勤甫等二十四人	『高麗史』卷10
㊱	1097 肅宗2・6・12	耽羅	子信	民/3	不明	漂風	躶國	宋	還	宋歸我漂風人子信等三人 初耽羅民二十人 乘舟漂入躶國 皆被殺 唯此三人得脫投于宋 至是乃還	『高麗史』卷11
㊲	1099 肅宗4・7・20	毛羅	趙暹	人/6	不明	失船	不明	宋	歸	宋歸我毛羅失船人趙暹等六人	『高麗史』卷11
㊳	1103	宋	劉逵	宋使	使行	遇颶風船	不明	不明	無	金漢忠 新羅大輔閼智之	『高麗史』卷95,

	肅宗8					幾敗				後…肅宗封太子 以漢忠兼左庶子 累授禮部尙書 宋使來 漢忠航海迎候 宋使卒遇颶風 船幾敗 賴漢忠拯救得全活	金漢忠 傳
㊴	1104 肅宗9	高麗	崔弘嗣	奉使	不明	颶風所飄	宋	不明	加賜金幣	崔弘嗣…授樞密院使 奉使如宋 忽爲颶風所飄 舟人無不拊心泣 弘嗣神色自若 及至宋 觀者稱其儀度中規 帝厚待之 加賜金幣 口宣云 顧惟樞近之臣宜有褒嘉之寵	『高麗史』卷97, 崔弘嗣傳
㊵	1108 天仁1·2·9	高麗·宋	不明	人	不明	來着	不明	不明	報告	或唐人·高麗人來着事	『中右記』
㊶	1113 睿宗8·6?·1	珍島縣	漢白	民/8	賣買	颶風所飄	宋明州	明州	賜絹米·發還	珍島縣民漢白等八人 因賣買往毛羅島 被颶風所飄到宋明州 奉聖旨 各賜絹二十匹·米二石 發還	『高麗史』卷13
㊷	1117 政和7·7·4	遼	高藥鉢·曹孝才·卽陳	人·僧/200	避亂向高麗	風漂	登州	不明	不明	是年 登州奏 有遼人船二隻爲颶風所飄達我駝基島 乃高藥鉢曹孝才及僧卽榮 率其親屬老幼二百人 因避亂欲之高麗 爲風漂至州	『北朝北盟會編』卷1, 政宣上帙
㊸	1123 宣和5·6·甲午	宋	路允迪	使	使行	風溺	不明	不明	不明	福惠明著天妃廟 曰靈慈 郡人 程端學爲記…宣和五年 給事中路允迪 以八舟使高麗 風溺其七 獨允迪舟 見神女降於檣而免 事聞於朝 錫廟額 曰順濟 紹興二十六年 封靈惠夫人…	『至正四明續志』卷3, 祠祀 神廟 在城 福惠明著天妃廟
㊹	1128 仁宗6·12·甲戌	高麗	金鐵衣	人/6	不明	値風漂流	金	金	移文分付	今年八月十四日 東京兵馬都部署司准東路軍司申巡檢司申 於海岸收捉貴國金鐵衣等六人 狀稱 浮海値風 漂流到此 情可憐憫 亦仰移文分付訖	『高麗史』卷15
㊺	1130 天會8	高麗	不明	漁夫/10	不明	大風飄	金	金	還國	是歲 高麗十人捕魚 大風飄其船抵海岸 曷蘇館人獲之 詔還其國	『金史』卷135, 高麗傳
㊻	1134 紹興4·7·24	羅州島/高麗	光金	人/10餘	汎海詣泉州	遇風	泰楚境	不明	養贍·舟還	高麗羅州島人光金 與其徒十餘人 汎海詣泉州 風折其檣 泊泰楚州境 上詔付沿海制置使郭仲荀 養贍 伺便舟還之 [據光金所供 以四月三日 自毛羅島起舟 當日遇風 至二十八日 吹到淮南地分 今附降旨之盜]	『建炎以來繫年要錄』卷78
㊼	1155 毅宗9·8.1?	高麗	知里先	人/5	不明	漂風	不明	宋明州	歸	宋明州歸我漂風人知里先等五人	『高麗史』卷18
㊽	1155 毅宗9·12	高麗	不明	人/30餘	不明	漂風	不明	宋	歸	宋歸我漂風人三十餘口	『高麗史』卷18
㊾	1170 乾道6	高麗	不明	賈胡	不明	風飄	不明	不明	不明	公諱允文 字彬父 隆州人也…時乾道五年八月戊子也…一日 有報國門外 海舶	『誠齋集』卷120, 碑宋故左丞相節度使雍國公…虞公神

										數百艘將及岸者 中外恍駭 上召問公 公對當是外夷賈舟風飄至此 果高麗賈胡也 上志克復…	道碑
㊿	1174 明宗4·8·3	高麗	張和	人/5	不明	漂風	不明	宋	歸	宋歸我漂風人張和等五人	『高麗史』卷19
51	1176 淳熙3	日本	不明	倭人/100餘	不明	風泊	明州	明州	日給錢米·遣歸	淳熙二年 倭船火兒滕太明 殿鄭作死 詔槭太明付其酋首歸 治以其國之法 三年 風泊日本舟至明州 衆皆不得食 行乞至臨安府者復百餘人 詔人日給錢五十文·米二升 俟其國舟至日遣歸	『宋史』卷491, 日本傳
52	1183 淳熙10	日本	不明	人73	不明	飄	秀州華亭縣	不明	給常平義倉錢米	日本七十三人復飄至秀州華亭縣 給常平義倉錢米以振之	『宋史』卷491, 日本傳
53	1186 明宗16·5·14	高麗	李漢	人/6	不明	漂風	不明	宋	歸	宋歸我漂風人李漢等六人	『高麗史』卷20
54	1193 紹熙4	日本	不明	倭人	不明	爲風所泊	泰州及秀州華亭縣	明州	給常平米·錢米,歸國	紹熙四年 泰州 及秀州華亭縣 復有倭人爲風所泊而至者 詔勿取其貨 出常平米振給而遣之 慶元六年 至平江府 嘉泰二年至定海縣 詔並給錢米遣歸國	『宋史』卷491, 日本傳
55	1217 興定1·12·5	日本	不明	大宰府民/72	罹	遇風飄	中國	不明	給糧·還國	卽墨移風帶於大船中得日本國太宰府民七十二人 因罹遇風 飄至中國 有司覆驗無他 詔給以糧 俾還本國	『金史』卷15
56	1224 元仁1·2·29	高麗	不明	人	不明	爲風所泊	越後國寺泊浦	不明	訊問	去年冬比 高麗人乘船爲風所泊于越後國寺泊浦 仍今日 式部大夫 執進其弓箭以下具足於若君御方 則覽之 奧州以下脩參 弓二張 羽壺一 太刀一 帶一筋 彼帶中央付銀簡 其中注銘四字也 又銀匙一 鋸一 箸一雙 櫛具足等者 似吾國之類 皆見形知名 於四字銘者 文士數輩雖令參候 無讀人之	『吾妻鏡』卷24
57	1224 元仁1·4·11	異國	不明	人	不明	船被吹寄	越後國白石浦	不明	報告	或人云 去五月比 越後國白石浦 異國船被吹寄 其長十餘長 船中搆作泉 乘人四人僅存命	『百練抄』第13
58	1229 高宗16·2·26	濟州	梁用才	民/28	不明	飄風	不明	不明	宋商僧來	宋商都綱金仁美等二人 偕濟州飄風民梁用才等二十八人來	『高麗史』卷22
59	1241 仁治2·辛丑	日本	聖一國師	僧	還國	風波深惡	耽沒羅阿私山下	高麗	達博多	師年四十歲…五月朔 船出明州定海縣 至大洋風波甚惡 同發者三船二船已沒 我船亦將沈者數次…六月晦 著高麗國耽沒羅阿私山下	『聖一國師年譜』

										留滯四日 七月達博多 諸綱首館來迎院 或請普說	
⑩	1243 高宗30·9·29	高麗	不明	人	不明	漂風	不明	日本國	歸	金州防禦官報 日本國獻方物 又歸我漂風人	『高麗史』卷23
⑪	1244 高宗31·2·2	日本	不明	商船	不明	遇颶風敗	濟州	不明	前濟州副使 等 銀·珏徹收 流島	有司劾奏 前濟州副使盧孝貞 判官李珏 在任時 日本商船遇颶風 敗於州境 孝貞等 私取綾絹·銀珠等物 徵孝貞銀二十八斤 珏二十斤 流于島	『高麗史』卷23
⑫	1258 寶祐6·10	高麗	張小斤三等	家奴·萬戶土軍·還俗僧/6	收買木植	飄流	石衙山	明州	支米錢·歸國	水軍申 石衙山有麗船一隻 麗人六名 飄流海岸 公命帳前將校 取之來 詰其所以 張小斤三 則麗之李樞密藏用家奴也 金光正金安成金萬甫盧善才 則麗之萬戶土軍也 金惠和 則麗之還俗僧也 各因本國還發把盌駕船往白陵縣 收買木植 是年十月十三日 在海遭風 不知所向 飄流至石衙山 具言…公以其事上聞 且從本司 日支六名 米各二升 錢各一貫 及歸國 則又給回程錢六百貫 米一十二碩 公於懷遠禦外 周且密矣	『開慶四明續志』卷8, 收養麗人
⑬	1263 元宗4·6	日本	如眞	僧俗/230·265	入宋求法	漂風	開也召島·群山·秋子 等	全羅道按察使	給糧·船護送其國	是月 日本官船大使如眞等將入宋求法 漂風 僧俗幷二百三十人 泊開也召島 二百六十五人 到群山·秋子二島…命全羅道按察使 給糧·船 護送其國	『高麗史』卷25
⑭	1263 元宗4·6	日本	大宰府少卿殿	商船/78	自宋將還本國	漂風失船	宣州加次島	全羅道按察使	給糧·船護送其國	大宰府少卿殿 白商船七十八人 自宋將還本國 漂風失船 以小船泊宣州加次島 命全羅道按察使 給糧·船 護送其國	『高麗史』卷25
⑮	1263 元宗4·7·27	日本	不明	商船/30	不明	漂風	龜州艾島	不明	賜糧護送	日本商船三十人 漂風到龜州艾島 命賜糧護送	『高麗史』卷25
⑯	1269 元宗10·5·1	濟州	不明	人	不明	漂風	日本	不明	至日本還情報傳達	慶尙道按察使馳報 濟州人漂風至日本 還言 日本 具兵船 將寇我 於是 遣三別抄及大角班 巡戍海邊 又令沿海郡縣 築城積穀 移彰善縣所藏國史於珍島	『高麗史』卷26
⑰	1281 至元18·5	日本	不明	船	不明	風水漂	不明	不明	水工畫地圖·訊問	今年三月 有日本船爲風水漂至者 令其水工畫地圖 因見近太宰府西有平戶島者 周圍皆水 可屯軍船 此島非其所防 若徑往據此島 使人乘船往一岐 呼忻都·茶丘來會進討爲利 帝曰 此間不	『元史』卷208, 日本傳

										悉彼中事宜 阿剌罕輩必知 令其自處之	
⑱	1292 忠烈王18·10·2	日本	不明	商船	不明	泊	耽羅	不明	還國而護送	今年五月 貴國商船到泊 耽羅洲渚 耽羅性頑譎 射逐其船 邏捉二名而送之 小邦申於大元國皇帝 詔問其由 命還本國而護送 伏惟悉之	『高麗史』卷30
⑲	1292 忠烈王18·6·1	元	徐興祥	江南漕運萬戶	運米	遭風漂溺	高麗	不明	不明	元 遣江南漕運萬戶徐興祥等 運米十萬碩 來賑飢民 遭風漂溺 唯來輸四千二百碩 遂頒米于諸領府及五部戶一碩	『高麗史節要』卷21
⑳	1293 忠烈王19·7·23	倭	不明	人/8	不明	泊	不明	不明	致來	鎭邊萬戶韓希愈 致泊泊倭八人來	『高麗史』卷30

[備考]
* 元·高麗의 일본 원정 때의 표류사례는 생략하였다.
* 『長編』은 『續資治通鑑長編』의 약칭이다.
* 본 [표]의 작성에는 張東翼, 『宋代麗史資料集錄』,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張東翼, 『日本古中世高麗資料硏究』,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장동익 지음, 『高麗時代 對外關係 綜合年表』, 동북아역사재단, 2009; 김기섭 외, 『일본 고중세 문헌 속의 한일관계사료집성』, 혜안, 2005 등을 참조하였다.

이 [표]에는 표류민의 出身地/國, 人名, 身分/規模, 漂流形態, 漂着地/國, 送還地/國, 措處 등이 비교적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본 절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이 시기 표류민의 일반적인 특징을 도출하기로 한다.

먼저 漂流民의 출신국을 보기로 한다. 10~13세기 동아시아를 구성하는 高麗·宋元·日本(倭) 가운데 출신국이 명확하지 않은 1건(異國⑰)을 제외하면, 高麗(신라·후백제 포함)가 47건(약67%), 日本(倭 포함)이 12건(⑤①②③⑥⑧㊳㊵㊷㊸㊾: 약17%), 중국이 10건(①②③⑥⑧㊳㊵㊷㊸㊾: 약14%)이다. 이처럼 이 시기 동아시아 해역권에서 발생한 표류민의 경우, 송원인·일본인이 상대적으로 적고 高麗人이 특히 많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표]

가운데 해난사고의 발생 원인과 표착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표류형태'이다. 이에 의하면, 瓢蕩, 飄風, 漂風(風漂), 風溺, 遇風, 大風 등의 용례에서 보듯이, 표류는 大風에서 비롯되고, 이어서 선박의 파손·전복과[大風船破(⑥), 海風壞船(⑪), 遭風覆舟(⑯), 遇颶風幾履舟(㉚), 因風失船飄流(㉛), 漂風失船(㊹) 등] 航路의 이탈[大風失道(㉜)]이라는 단계를 거치며, 최후로 목적지 이외의 지역·국가에 漂着하고[寄著(⑤), 來著(⑦), 流來(⑫⑳㉑ 등), 風泊(㊶㊹ 등), 船被吹寄(㊼ 등)]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잘 보여주는 것이 '泛海漂風到東南極遠島'(⑲)와 '浮海値風漂流到此'(㊸)이다. 그런데 이 표류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는 瓢蕩, 飄風, 漂風, 大風 등은 기상의 영역에 속하고, 선박의 파손과 전복 등은 造船術, 항로이탈은 航海術과 관련이 있다. 그렇다면 이 시기 표류민 가운데 고려 출신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宋元人과 일본인이 적다는 것은 氣象知識과 航海術의 優劣,[6] 造船術의 우열에서 비롯된 측면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고려가 해양에 대한 지식과 항해술, 조선술에서 송·일본보다 열악하여 표류민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농후하다.

다음에는 표류민의 신분 구성이다. 이에 대한 고찰은 이 시기 동아시아 해상교역체제의 추이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실마리가 된다. [표]에 제시된 70건의 표류사례를 신분별로 분류하면, 使臣 16건(①②③⑥⑧⑨⑭⑯⑰㉖㉚㉜㊳㊴㊸㊸), 僧侶(還俗僧 포함) 4건(㊷㊾㊷㊸), 軍人 3건(㉗㊷㊾), 家奴 1건(㊷), 商人(海商) 7건(상인㉙, 商船㊶㊹㊺㊽, 交易④, 賈胡㊾ 포함), 漁夫 1건(㊺)이고, 불명확한 것 2건(新羅舟⑤, 日本船㊼)을 제외한 나머지 40건은 일반민([표]에는 주로 人·民으로 표기)이다.

---

6) 王文楚, 「兩宋和高麗海上航路初探」, 『文史』 12, 1991, 375쪽에 의하면, 宋人은 해상지식과 항해술이 풍부하여 東中國海를 항해할 때 계절풍을 잘 이용하여 해난사고가 적었다고 한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표류민의 신분이 시기에 따라 변화를 보인다는 점이다. 이를 국가별로 검토하면 그 현상이 뚜렷해진다. 우선 중국의 경우 총 10건의 표류사례 가운데 後梁이 2건(①②), 契丹이 1건(③), 遼가 1건(㊷), 송이 5건(⑥⑧㊳㊵㊸): 원이 1건(㊾)이다. 이를 표착국에 따라 분류하면, 고려에 표착한 사례는 6건(②⑥⑧㊳㊸㊾: 단 ②는 고려 이전)이고 일본은 1건(㊵)이며, 신분은 사신이 8건(①②③⑥⑧㊳㊵㊸: ①~③은 고려 이전, ⑥~㊸은 宋使), 군인이 1건(㊾: 元軍), 피란민이 1건(㊷: 遼)이다. 이를 다시 시기별로 분류하면, 송의 경우에는 1123년을 기점으로 그 이후에는 보이지 않고, 원은 13세기 말에 국한되어 있다. 이처럼 중국인의 표류는 12세기 초반에 집중되어 있고, 표착국은 거의 고려에 한정되어 있으며, 신분은 사신이 대부분이고[7] 宋商을 포함한 일반민은 적다.[8]

총 12건의 표류 사례를 남기로 있는 일본의 경우, 시기별 분류에서 주목되는 것은 표류는 모두 1176년 이후에 발생하고 그 이전에는 한 건도 없는 점이다. 그리고 이 12건을 표착국에 따라 분류하면, 송금원이 5건[(송이 3건(㊶㊷㊸), 금이 1건(㊺), 원이 1건(㊼)]이고, 고려가 7건(㊾㊶㊸㊹㊺㊽㊿)이다. 이를 다시 신분별로 분류하면, 상인(商船 포

7) 북송·남송 합쳐 宋이 醫官을 포함하여 고려에 사신을 파견한 것은 32회이고, 송의 牒狀이나 황제의 密旨 등을 전달한 상인을 포함하면 38회 정도 고려와 외교적으로 접촉하였다(이승민, 앞의 논문, 4쪽).

8) 10세기 중엽, 즉 당송교체기를 거치면서 동아시아 국제교역의 담당자는 新羅商에서 唐商으로 전환되었고, 이후 다시 唐商에서 宋商으로 이행되면서 동아시아 해역권에서 宋商이 교역의 중심이 되었다. 이들 宋商은 고려·일본을 정기적으로 왕래하면서 대외교역을 주도하였다(김영제, 「宋·高麗 交易과 宋商」, 『사림』 32, 2009). 일례로 고려 전시기 동안에 고려에 입국한 송상은 130회, 4,948인이며, 이 가운데 북송시기(1012~1124)가 96회, 3,058인이고, 남송시기(1128~1278)가 34회, 1,897인이다(고려시대 宋商의 활동에 대하여는 朴玉杰, 「高麗 來航 宋商人과 麗·宋의 貿易政策」, 『大東文化硏究』 32, 1977 ; 楊渭生, 『宋麗關係史硏究』, 杭州大學出版社, 1997 참조).

함)이 4건(⑥①⑥④⑥⑤⑥⑧), 僧이 2건(⑤⑨⑥③), 나머지 5건은 人으로 되어 있다[⑤①⑤②⑤④⑤⑤⑦⓪: 일본인·船으로 표기된 것이 2건(⑤②⑥⑦), 倭人·船으로 표기된 것이 3건(⑤①⑤④⑦⓪), 民으로 표기된 것이 1건(⑤⑤)이다]. 다만 商人 이외의 사례 가운데 1193년에 泰州·秀州華亭縣에 표류한 倭人의 경우에는 '詔勿取其貨'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⑤④) 商人일 가능성이 높고, 1263년 入宋求法을 위해 항해하던 日本官船大使 如眞의 일행 가운데 표류한 僧俗(⑥③)에서 俗도 그 성격상 상인으로 분류해도 될 것이다. 따라서 이들도 상인으로 분류하면, 일본 표류민(12건) 가운데 상인은 6건이 된다(내용이 불명확한 4건도 상인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 시기 일본 표류민의 신분은 僧을 제외한 나머지는 상인으로 분류해도 크게 잘못은 아닐 것이다.

漂流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고려출신 표류민(47건)의 경우, 표류시기는 顯宗代(1010~31년)를 전후하여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즉 顯宗代 이전 표류 사례는 겨우 8건(약15%)에 불과하였지만, 현종대 이후부터 12세기 초까지는 29건으로 약63%를 차지하고, 그 이후는 10건(약22%)으로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해상 루트를 통한 고려의 對外무역의 추이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일반적으로 고려시대 대외무역은 契丹과의 전쟁이 마무리된 顯宗代 이후부터 점차 확대되었고, 11세기 말~12세기 초가 가장 활발하였다.[9] 따라서 고려 표류민의 시기별 발생의 변화는 대외무역의 추이와 직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고려 표류민을 표착국에 따라 분류하면, 宋元에 표류한 사례가 28건으로서 절반을 약간 상회하고, 일본에 표류한 사례가 19건이다. 이를 다시 신분별로 분류하면, 使臣 7건(⑨⑭⑯㉖㉚㉜㊳: 모두 송에 파견), 軍人·還俗僧·家奴 합쳐 1건(⑥②: 송), 商人 3건(④㉙는 일본, ㊽은

9) 金庠基, 「高麗前期의 海上活動과 文物의 交流」, 『東方史論叢』, 서울대출판부, 1986.

송), 漁夫 1건(㊺)이고, 나머지 35건은 人·民으로 표기된 일반민이다. 문제는 이들 일반민의 신분이다. 이 가운데 1019년에 일본 筑前國에 표착한 未斤達은 米를 운송하던 중에 표류하였기 때문에(⑮) 米商일 가능성이 높고, 1113년에 매매를 위해 珍島에서 毛羅島로 가던 도중에 표류한 珍島縣民 漢白 등 8인(㊴)도 상인으로 분류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 또한 1258년 明州에 표착한 家奴 등 6인도 木植을 收買하러 航海 중에 표류하고 있기 때문에(⑫) 商人으로 보아도 될 것이다. 물론 이밖에 내용상 단순히 표류인, 고려인, 탐라인 등으로 표기되어 있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신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시기 동아시아 해역권에서는 공무역보다 상인에 의한 민간무역이 일반적인 것을 고려하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을 상인으로 보아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표류민 가운데 人·民으로 표기된 일반민의 신분을 상인으로 보고 高麗 표류민의 신분 전체를 시기별로 다시 분류하면, 使臣은 11세기 이전에 집중되어 있고 그 이후는 보이지 않으며, 그 대신 12세기 초 이후는 商人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이상 살펴보았듯이, 10~13세기 동아시아 교역권에서 발생한 표류민의 신분은 使臣, 상인(海商), 僧侶, 軍人, 家奴, 漁夫 등 다양하였지만, 이 표류민의 신분구성은 12세기 중후반을 경계로 使臣에서 상인으로 그 중심이 이동되었다. 이러한 표류민 신분의 중심이동은 결국 이 시기 동아시아의 대외교역시스템이 互市體制(公貿易體制/國家管理體制)에서 市舶司體制(私貿易體制/民間交易體制)로의 전환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10]

---

10) 10세기 전후 동아시아의 대외교역시스템은 互市체제에서 市舶司체제로 전화되었다. 중국의 경우, 10세기 이전 대외교역은 互市體制였지만, 宋이 건국된 이후 海商의 海上진출이 성행함에 따라 출입국 관리 등 항만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市舶司의 설치가 일반화되었다. 이 시박사의 설치는

2. 사신의 표류와 송환 절차

앞서 언급하였듯이, [표]에 제시된 총 70건의 표류 사례에서 使臣의 표류는 16건으로서 약 23%에 해당된다. 이 가운데 고려가 8건(⑨⑭⑯⑰㉖㉚㉜㊴)으로 50%를 차지하고, 중국이 7건(①②③⑥⑧㊳㊸)으로 약 44%를 차지하며, 일본은 고려에 표류된 1건(㊸)에 불과하다. 그러면 이를 중심으로 당해시기 중국과 고려·일본에서 시행된 표류 사신에 대한 송환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송

[표]에 보이듯이, 송에 표착한 사신은 高麗使 8건에 불과하고, 日本使의 표류 사례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송의 표류사신에 대한 송환조처는 고려 使臣에 한정된다. 그리고 이들 사례 가운데 사신에 대한 송환

국가의 교역정책이 종래의 互市체제에서 市舶司체제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요컨대 '互市체제에서 市舶司체제로'는 10세기 전후(당송이행기) 중국의 대외교역체제가 국가관리시스템(호시체제)에서 민간교역시스템(시박사체제)으로 전환되었음을 말해준다. 고려의 경우, 전기 대외무역은 국가관리시스템적 질서 즉 공무역체제인 '私獻貿易'의 형태를 취하였다. 그러나 무인집권기가 시작되는 12세기 후반이 되면 왕실과 상인이 결탁한 사무역이 일반화되면서 종래의 사헌무역은 붕괴되고 민간교역이 중심이 된 사무역체제로 전환되었다. 일본의 경우 9세기 후반 이후 전개되는 다자이후 교역은 중앙에서 파견된 唐物使에 의한 교역관리가 시행되었지만, 그 이후는 쇠퇴하고 10세기에 이르러 博多를 유일한 교역장, 鴻臚館(11세기 중엽까지 존속)을 客館으로 하는 다자이후 교역이 시행되었다. 일본에서의 博多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이후 국제교역은 10~13세기 전후 중국·고려에서 전개된 교역시스템의 변화와 동일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고, 그것은 다름 아닌 국가관리시스템에서 민간교역시스템으로의 전환이다. 이상 10~13세기 동아시아교역권에서 전개된 '互市체제에서 市舶司체제로'의 변동에 대하여는 전영섭, 앞의 논문(2009) 참조.

절차가 기술되어 있거나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 엿보이는 것은 護送使 元證衍(⑨), 禮賓卿 崔元信(⑯), 民官侍郎 金悌(㉖), 戶部尙書 柳洪(㉚), 樞密院使 崔弘嗣(㊳) 정도이다.

우선 護送使 元證衍의 사례이다. 원증연은 成宗 12년(993) 6월 甲子(7)에 冊封使로 고려에 온 송의 光祿卿 劉式 등이 귀환할 때, 호송사로 파견되었지만, 安香浦口에 이르러 풍랑으로 선박이 파괴되고 공물을 상실하였다. 이에 太宗은 登州에 조서를 내려 그를 송환시키고, 성종에게는 의복·銀器·羊 등을 하사하고 있다. 이 사례에서는 송의 표류사신에 대한 조처로서 '송환'이 시행되고 있고, 게다가 이 조처는 송 초부터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禮賓卿 崔元信의 사례이다. 고려의 進奉使 최원신 일행이 송에 파견된 것은 顯宗 10년(1019) 8월이다.[11] 최원신은 한 달여 뒤인 9월 辛巳(28일)에 登州(현 山東省 蓬萊市)의 입구인 秦王水口에 이르러 풍랑을 만나 선박이 전복되었고 공물을 漂失하였으며 다수의 익사자가 발생하였다. 이에 登州에서는 최원신의 표류 지점과 선박 전복, 공물 상실 등을 중앙에 보고하고 있다. 이후 宋眞宗은 中使을 파견하여 이들을 存撫케 하고, 또 登州에 명령하여 사신단에게 수레(脚乘)를 지급하여 京師로 보내도록 하였다. 그리고 上京한 최원신 일행이 入見하여 錦·漆甲을 바치고 아울러 別貢으로 中布 2千을 바치며 佛經 1藏을 요청하자, 眞宗은 그것을 허락하고 布는 돌려주었으며, 최원신에게 배의 전복에 따른 궁핍을 이유로 의복과 비단을 내리고 있다.[12]

이 최원신의 사례에는 송의 표류사신에 대한 조처로서 해당 지방관청의 중앙으로의 보고, 조정의 사신(中使=中官) 파견을 통한 存撫와 上京에 필요한 물품 공급, 상경 사신에 대한 의복과 비단 등의 지급이라는 절차가 상정된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登州言'의 주체,

11) 遣禮賓卿崔元信·李守和 如宋賀正(『高麗史』 卷4, 顯宗 10年 8月 己丑條).
12) 『長編』 卷94, 天禧 3年 11月 己卯條.

다시 말하면 登州에서 중앙으로 보고한 관청이 어디인가 하는 점인데, 아마 등주의 장관(知登州)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현종 11년(1020) 4월에 고려로 돌아온 최원신은 汚辱의 명목으로 부사 李守和와 함께 유배되고 있다.[13] 여기서 말하는 汚辱은 아마 풍랑에 따른 선박의 전복과 공물의 漂失 등으로 국가위신을 추락시킨 것을 가리키는 듯하다.[14]

다음은 民官侍郎 金悌의 사례이다. 김제는 문종 25년(1071) 3월 5일에 송에 파견되었고,[15] 5월 22일에 通州(현 江蘇省 南通市) 海門縣(현

13) 현종 11년(1020) 4월에 고려로 돌아온 최원신은 汚辱의 명목으로 부사 李守和와 함께 유배되고 있다(『高麗史』 卷4, 顯宗 11年 5月 庚辰條).

14) 고려의 이러한 조처에 대한 송의 대응은 보이지 않는다. 최원신의 표류건에 대하여 고려 측에서 汚辱을 명분으로 처벌하고 있는 것은 당시 동북아시아 국제정세와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방에 흥기한 거란은 宋과의 분쟁 속에서 고려와 송의 관계를 차단하기 위하여 세 번에 걸쳐 고려를 침략하였다(993년에 1차, 1010년에 2차, 1018년에 3차). 2차 침입 이후 고려는 顯宗 5년(1014)부터 송으로 계속 사신을 파견하여 송과의 연대를 모색하였고, 顯宗 6년(1015)에는 民官侍郎 郭元을 보내어 거란이 매년 침입하는 것을 알리고(『高麗史』 卷4, 顯宗 6年條 ; 『長編』 卷85, 大中祥符 8年 11月 癸亥條),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당시 송은 거란과 盟約을 맺었기 때문에 오히려 고려와 거란의 和睦을 주장하였다(『高麗史』 卷94, 郭元傳). 이 과정에서 특히 거란은 1018년에 江東 6주 문제로 고려를 세 번째로 침입함으로써 고려와 거란의 긴장은 고조되었다. 1019년에 최원신이 송에 파견된 것도 송과의 관계 강화라는 목적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원신의 표류는 상당한 문제가 되었고 결국 유배형에 처해졌다고 생각된다.

15) 『高麗史』 卷8, 文宗 25年 3月 庚寅條. 이에 의하면 김제 등의 使行路는 登州를 거쳐 入貢하게 되어 있었지만, 후술하듯이 표류된 곳은 通州 海門縣 新港이다. 김제가 파견된 1071년은 고려와 송과의 通交가 재기된 해이다. 고려와 송은 1030년에 외교관계가 단절되었고, 이후 북방에 발흥한 거란을 견제하기 위하여 1071에 通交가 재기되어 고려가 來貢하였다(『宋史』 卷487, 高麗傳 ; 『玉海』 卷154, 朝貢獻方物建隆高麗來貢). 김제의 파견은 이러한 통교의 재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문종 24년(1070) 8월 22일에 神

강소성 啓東 동쪽 海門)에 이르고 있다.[16] 이때 사신단은 明州 四明縣에 상륙하려 하였지만, 海風으로 표류하여 通州 해문현 新港에 도착하였다. 김제 일행은 漂着 후에 狀을 올려 海道의 방향을 北極星(北極)을 지표로 항해하던 중에 그 오류로 迷路에 빠져 다른 곳에 도착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 김제의 사례에서 등주로 온 것은 사신이 표착 이후에 표류 상황을 自述하여 上表하고 있는 점인데, 이는 송의 표류에 대한 조처의 하나인 訊問·조사에 해당한다. 다만 이 이외에 송의 조처는 보이지 않는다.[17]

다음에 살펴볼 戶部尙書 柳洪의 사례는 표류 사신에 대한 송환 절차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게다가 그 내용도 앞서 검토한 최원신과는 자못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 유홍사례는 표착 이후 사신의 보고, 표실공물의 처리, 표류사신 救濟者에 대한 처리, 송환된 이후의 송의 입장이라는 대략 네 가지의 조처로 되어 있다.

첫째, 표착 이후 사신의 보고이다. 유홍은 禮部侍郎 朴寅亮 등과 文宗 34년(1080) 경에 進奉使로서 송에 파견되었지만,[18] 文宗 34년 정월

宗의 통교 再起 密旨를 가지고 고려에 온 상인 黃愼이 고려에 朝貢을 요청하였고, 이에 그 答禮로서 김제가 表文·禮物을 가지고 사신으로 파견되었다.

16) 『長編』 卷223, 熙寧 4年 5月 丙午條.

17) 『嘉定鎭江志』 卷21, 雜錄 文事에 의하면, 김제와 동행한 朴寅亮·李縫孫 등이 도중에 詩文 70여 편을 唱和하여 『西上雜錄』이라 하고, 이봉손이 서문을 지었다고 한다. 후술하지만, 이때 救濟를 담당한 明州 象山縣尉 張中은 박인량 등과 私的으로 시문을 唱和한 죄로 해당 관서의 탄핵을 받아 免職되고 있다(『長編』 卷301, 元豊 2年(1079) 11月 辛卯條 ; 『澠水燕談錄』 卷10, 雜錄).

18) 유홍 등의 使行은 문종 33년(1079) 7월 辛未(5)에 송이 閤門通事舍人 王舜封 등 88인을 파견하여 고려가 요청한 醫官 및 藥材를 하사한 것(『高麗史』 卷9, 文宗 33年 7月 5日條)에 대한 답례의 일종이었다. 문제는 유홍 등이 송에 파견된 것이 언제인가 하는 점인데, 『高麗史』에는 유홍의 使行기사가 卷9, 文宗 34年 3月 壬申(9)條에 실려 있고, [표]에 제시한 ㉚에 보이듯이,

乙酉(21)에 浙江에 이르러 표류하여 貢物의 절반을 유실하였기 때문에 上表하여 자신을 탄핵하였다.[19] 둘째는 표실 공물에 대한 처리이다. 유홍이 표착하고 2일 후인 정월 丁亥(23일)에 兩浙轉運司가 유실한 貢布 등을 溫州民이 海中에서 수거하였다고 보고하였고, 神宗은 연해의 州縣에 방을 붙여 고려 공물을 획득하고 1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자에게 3/10을 상으로 지급하고, 범인은 장물을 계산하여 盜律에서 2등을 더하며, 이웃이 알고도 알리지 않으면 犯人보다 2등을 감한다는 규정을 반포하고 있다.[20] 송이 표실 공물의 습득을 贓物의 취득으로 간주하고 그것을 신고하지 않으면 盜律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대외교역의 성행에서 외교 분쟁의 빌미를 차단하는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셋째는 표류사신 구제자에 대한 처리이다. 유홍 사신단이 표류하였을 때, 이를 구제한 이는 張中이었다. 그는 이 공로로 1071년에 표류한 김제 사신단을 救護하면서 사신과 사적으로 詩文을 唱和한 죄로 좌천된 처벌에서[21] 풀려나고 있다.[22] 흥미로운 것은 유홍이 표류하였을 때, 구제를 담당한 장중의 직책이 明州 象山縣尉라는 점이다.

넷째, 송환된[23] 이후의 송의 입장이다. 유홍의 표류사례에서 주목되

『高麗史』 卷95, 朴寅亮傳에는 문종 34년으로만 표기되어 있고, 월일은 생략되어 있으며, 『宋史』 卷487, 高麗傳에는 元豊 2년(1079)으로만 표기되어 있다. 이와는 달리 『長編』 卷302에는 파견된 기사는 보이지 않고 표류한 기사만 실려 있는데, 표류시점도 元豊 3年 春正月 乙酉(21)로 서술하고 있다. 이처럼 유홍의 파견시기는 자료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어 확정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시기를 일단 문종 34년(1080) 정도로 해두고, 유홍 일행이 표류한 이후의 행적과 송의 조처에 대하여는 연월별로 비교적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는 『長編』에 의거하여 분석한다.

19) [표]에서 보듯이, 神宗은 勅書를 내려 유홍의 잘못을 용서하였다. 이를 통하여 송이 사신의 표류에 대하여 매우 관용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20) 『長編』 卷302, 元豊 3年 春正月 丁亥條.

21) 앞의 주 17).

22) 『長編』 卷303, 元豊 3年 4月 更子條.

는 것은 귀국 후의 송과 고려의 대응이 최원신과는 상반되고 있는 점이다. 앞서 본 최원신은 귀국 후 유배되고 있지만, 유홍의 경우에는 神宗이 文宗에게 貢船이 해상에서 風波를 만난 것은 沙工[操舟]의 잘못이지 사신의 죄가 아니기 때문에 용서하라는 回降詔書 이외의 勅書를 내리고 있고,[24] 문종도 이 칙서에 의거하여 유홍 등의 죄를 용서하였다.[25]

다음에는 樞密院使 崔弘嗣의 사례이다. 肅宗 9년(1104)에 秘書監 鄭文 등과 송에 파견된 최홍사는 飄風으로 표류하다 明州에 도착하였다. 이에 대한 송의 조처를 보면, 황제는 그를 후하게 대우하여 金幣를 하사하고 있다. 다만 최홍사에게 내린 金幣는 일반 사신보다는 厚待였다고 생각되지만, 이밖에 표류와 관련된 내용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알 수 없다.[26]

이상 검토한 내용을 통하여 송에서 시행한 표류 사신의 표착에서 송

---

23) 『高麗史』에는 유홍·박인량 등이 고려로 돌아온 것은 文宗 34년(1080) 7월 2일로 되어 있지만(『高麗史』 卷9, 文宗 34年 7月 癸亥條), 『宋大詔令集』에는 정확한 귀국일자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고, 神宗이 문종에게 勅書(유홍이 휴대하고 와서 문종에게 올린 칙서)를 내린 시기는 元豊 3년(1080) 3월 30일로 되어 있다(『宋大詔令集』 卷237, 政事90 四裔10 高麗 賜高麗國王詔).

24) 『長編』 卷302, 元豊 3年 3月 甲戌條. 고려 측에는 유홍의 귀국과 그에 따른 신종의 칙서가 『高麗史』 卷9, 文宗 34年 7月 癸亥條에 실려 있다.

25) 고려 조정에서 유홍과 최원신에 대한 대우를 달리한 이유는, 사료가 간단하여 명확하지는 않지만, 우선 사료에 한정해서 보면 '上表自劾'의 유무가 주목된다. 공식사절로서 파견된 사신이 표류한 것은 외교적으로 중대한 과실이고, 이러한 과실에 대하여 유홍은 上表하여 자신을 탄핵한 반면에 최원신은 이러한 절차를 결하고 있다. 그러나 양자에 대한 처벌의 차이는 고려와 송의 통교가 재기된 1071년을 기점으로 그 이전과 이후라는 시대적 배경도 작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高麗史』 卷9, 文宗 34年 7月 癸亥條).

26) 송은 표류 사신에 대한 식량과 의복 지급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마련하고 있다. 登州 지역을 예로 들면, 天禧 5년(1021)에 등주에 錢 10만을 주어 고려 貢使의 비용으로 충당하고 있다(『長編』 卷97, 天禧 5年條).

환까지의 절차를 구성하면, "㉠선박의 漂着→㉡官의 救濟→㉢訊問·조사(❶표착사신의 上表 ❷표실 공물 처리)→㉣담당관의 중앙으로의 보고→㉤중앙에서의 사신 파견→㉥存撫와 上京 지시→㉦의복·예물 등 지급→㉧송환→㉨(사신) 本國으로의 詔書 하달"로 정리할 수 있다.

2) 고려·일본

다음에는 고려와 일본에 표착한 使臣의 송환절차를 구명하기로 한다. 여기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위에서 도출한 송대 표류사신의 송환절차를 기초로 고려·일본의 표류 사신에 대한 송환절차를 고찰하기로 한다. 먼저 고려의 송환절차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 시기 고려에 사신으로 파견되어 표착하였거나 타국으로 파견되어 항해하던 중에 고려에 표착한 사례, 또는 고려(신라·후백제 포함)에 파견되어 귀환하던 중에 표류한 사례는 중국 7건(①②③⑥⑧㊳㊸)과 일본 1건(㊸) 총 8건이다. 이 가운데 일본을 제외하고 중국의 사례를 다시 국가별로 분류하면, 後梁使가 2건(①②), 거란사 1건(③)이고, 나머지 4건(⑥⑧㊳㊸)은 고려에 파견된 宋使이다.

그런데 이들 표류사신의 사례에서 공통적인 현상은 고려의 송환절차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 적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중국의 표류 사신 가운데 後梁 開平 3년(908) 4월 甲寅(19)에 후량 태조에 의해 閩王에 책봉된 福建節度使 王審知가[27] 江淮(揚州)를 점거하고 있던 楊行密을 피해 海路를 통해 登·萊州를 거쳐 후량에 조공하는 사신을 매년 파견하였지만, 漂沒者(『新五代史』는 '覆溺')가 10에 4·5(『新五代史』는 3·4)라고 한 사례(①), 고려 太祖 10년(927)에 후백제에 來聘한 裴姑麻咄 등 使行團이 귀국할 때, 伴送하던 將軍 崔堅이 북쪽으로 항해하던 중에 표풍으로 登州에 표착하여 모두 살육당한 사례(③), 宣和 5년(1123)에

27) 『舊五代史』 卷4, 梁書4 太祖紀4 開平 3年 4月 甲寅條.

給事中 路允迪이 8척의 배로 고려에 사신단으로 파견되었으나 풍랑으로 7척이 침몰하고 路允迪이 승선한 1척만이 仙女의 도움으로 고려에 도착했다는 기록(㊸) 등은 당시 海路의 험난함을 알 수 있는 점에서 유용하지만, 표류사신의 송환조처에 대하여는 거의 언급이 없다. 그리고 開平 4년에 兩浙지역에 사신으로 파견되면서 도적을 피해 深海로 나갔다가 표류하여 耽羅國에 이르러 일행이 모두 익사한 後梁의 右武衛上將軍 司馬鄴의 표류건도 송환조처와는 그다지 관련이 없다. 게다가 成宗 7년(端拱 원년, 988)에 파견된 考功員外郎兼侍御史知雜事 呂端 사신단의 경우도[28] 귀환 중에 風濤에 의해 공물을 모두 상실하였다는 내용만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고려의 표류사신의 송환조처와는 직결되지 않는다.[29]

따라서 중국 7건의 표류사신 사례에서 고려의 송환절차가 부분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것은 실제 2건에 불과하다. 하나는 처음으로 송의 年號를 사용한[30] 光宗 14년(963)에 고려에 冊命使로 파견된 時贊[31] 사신단의 경우인데, 光宗은 혼자 생존한 시찬에게 특별히 厚勞하고 있다(⑥). 이 사례에 보이는 '特厚勞'는 송의 송환절차에서 '㉤存撫와 上京지시→㉥의복·예물 등 지급'에 해당할 것이다. 또 하나는 肅宗 8년(1103)에 宋使가[32] 갑자기 표풍을 만나 선박이 파괴된 경우인데, 이때

---

28) 여단 사신단은 成宗 7년(988) 10월에 고려에 도착하였다(『高麗史』 卷3, 成宗 7年(988) 10月條 ; 『高麗史』 卷80, 食貨志3 賑恤 恩免之制).

29) 元宗 4년(1263) 6월에 고려에 표류한 日本官船大使 如眞의 사례는 大使이기는 하지만, 표류자가 僧·俗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려의 표류 商人 송환조처에서 분석하고 여기서는 생략한다.

30) 『高麗史』 卷2, 光宗 14年 12月條.

31) [표]에서 제시하였듯이 時贊의 국적은, 『長編』 卷4에는 高麗使로(『宋史』 卷487, 高麗傳에도 高麗使臣團으로 되어 있다), 『高麗史』 卷2에는 宋使로 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朴容雲, 「高麗·宋 交聘의 목적과 使節에 대한 考察(上)」, 『韓國學報』 81, 1995, 193쪽, 주 18)에서 宋의 使臣으로 보고 있는 것에 의거하여 宋使로 분류하였다.

迎接使로 파견된 金漢忠이 이를 구조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송의 송환절차에서 '㈁官의 救濟'에 상당한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당시 표류한 宋使를 구제한 김한충의 직책이 禮部尙書라는 점이다. 이는 고려에서 사신의 영접은 예부상서가 담당했음을 말해주지만, 문제는 예부상서가 표류사신의 구제까지 담당했는가 하는 점이다. 물론 위의 사례는 김한충이 영접사로서 항해 중에 송사가 표류했기 때문에 구제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하나의 사례만으로 예부상서가 표류사신의 구제를 전담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고려에서의 표류사신의 救濟에 예부상서도 일정한 역할을 하였던 것만은 사실인 듯하다.[33]

다음은 일본의 표류사신에 대한 송환절차이다. [표]에서 보듯이 일본도 고려와 마찬가지로 표류사신의 송환절차를 알 수 있는 내용이 현재로서는 거의 없다. 게다가 일본에 표류한 21건의 사례 가운데 사신 표류는 1건에 불과하다(⑰). 즉 1019년에 對馬島에서 출발한 고려 사신단이 표류하여 筑前國에 도착하였는데, 이들의 진술에 그 유래가 불투명하고 게다가 의심되는 점이 있어서 安東都護府에 문의하였다고 大宰府가 보고한 내용이다. 그럼에도 이 사례에는 표류사신에 대한 일본의 송

32) 김한충이 구제한 宋使에 대하여 이승민, 앞의 논문, 31~34쪽, [부록 1]에서는 明州敎鍊使 張宗閔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종민이 고려에 온 것은 肅宗 8년 2월 己巳이고[八年…二月己巳 宋明州敎練使張宗閔・許從等與綱首楊炤等三十八人來朝(『高麗史』 卷12, 肅宗 8年 2月 己巳條], 김한충이 예부상서에 임명된 것은 5월 辛巳이기 때문에[八年…五月辛巳 以金漢忠爲禮部尙書 任懿爲兵部尙書 金景庸爲戶部尙書(『高麗史』 卷12, 肅宗 8年 5月 辛巳條)] 김한충이 예부상서로서 재임 때에 救濟한 宋使는 장종민이 될 수 없다. 5월 이후 고려에는 6월 壬子에 國信使 戶部侍郎 劉逵의 사신단이 입국하고 있기 때문에[八年…壬子 宋遣國信使戶部侍郎劉逵・給事中吳拭 來賜王衣帶匹段・金玉器・弓矢・鞍馬等物(『高麗史』 卷12, 肅宗 8年 6月 壬子條)] 김한충이 구제한 宋使는 劉逵로 추정된다.

33) [표]에서 인용한 사료에서는 이 때 표류한 송사의 표류지점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다만, 예부상서가 迎接使로서 항해 중에 표류했다는 것에서 보면, 송사의 표류지는 開京 부근일 가능성이 있다.

환절차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 우선 고려사신단의 표착지역은 筑前國인데 최종 보고는 大宰府가 하고 있다. 그렇다면 고려사신의 표착건은 筑前國에서 대외전담부서인 大宰府에 보고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표류사신의 송환절차에는 앞서 본 송의 송환절차에서 '㉣담당관의 중앙으로의 보고'가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표착사신의 진술에 대하여 '유래 불투명', '의심'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송의 송환절차에서 '㉢訊問・조사'가 행해졌음을 말해준다. 특히 말미에 있듯이, 신문・조사의 사실여부를 '安東都護府에 문의'한 것은 송・고려에는 없는, 일본 독자의 조처라고 할 수 있다.

3. 일반민의 표류와 송환 절차

앞서 언급하였듯이, [표]에 제시되어 있는 70건의 표류사례에서 사신(16건)을 제외한 54건이 상인・승려・일반민 등에 관한 것이다. 이것을 국가별로 분류하면 고려가 40건(전체는 47건)이고, 일본이 12건(전체가 여기에 해당)이며, 중국은 2건(총 10건)에 불과하다. 이상을 염두에 두고 이들 사례를 중심으로 이 시기 표류의 다수를 차지하는 상인을 포함하는 일반민의 표류에 대한 각국의 조처를 검토하기로 한다. 다만 본고에서는 국가에 규정되어 있는 표류민에 대한 법규를 검토하고 이어서 이를 표류사례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과 비교・분석하여 표류민에 대한 전반적인 송환절차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논지를 전개하기로 한다.

1) 송

표류민에 대한 송의 규정 가운데 최초는 11세기 초에 반포된 다음의 사례이다. 즉 송은 大中祥符 9년(1016)에 明州(현 절강성 영파시)에 조서를 내려 신라[고려의 誤記]의 선박이 표풍으로 해안에 도착하면 口

에 의거하여 식량을 지급하고(據口給糧) 存撫를 倍加하여 순풍을 기다려 귀환시킬 것을 명하고 있다.[34] 이에 의하면, 표류민에 대한 存問·渡海糧 지급·귀환 조처가 정책화된 것은 1016년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3년 후인 天禧 3년(1019)에 고려의 海船이 風漂에 의해 권역에 도착했다는 明州·登州의 屢言에 대하여 황제는 詔令으로 存問·渡海糧 지급·귀환을 명하고 이것이 정례(著例)가 되었다는 규정이 나오고 있다.[35] 이 두 사례에서는 표류민에 대한 조처로서 '存撫(存問)·식량(渡海糧) 지급·귀환'이라는 세 가지의 공통적인 규정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송대에는 표류민에 대한 이들 기본적인 규정 이외에 거의 같은 시기에 표류 海商의 물품과 商船의 처리에 대해서도 규정이 마련되고 있다. 즉 송은 天禧 2年(1018)에 廣州에 조서를 내려 蕃商이 매매하던 중에 風飄를 만나 州의 관할 지역에 오면 州郡은 博易하여 구입한 紗·絹·紬·布·見錢 등은 廣州市舶亭에 보관하되, 중국의 물품이 아닌 것은 沒官하고, (중국의 물품에서) 紗·絹·紬·布物 등은 3분의 1은 몰관하고 3분의 2는 本主에게 돌려주며, 이를 어기는 자는 違制失條例에 따라 科斷한다고 하였다.[36] 여기에는 표류 해상이 소지한 물품의 구입과 보관, 출산지별 분류와 처리 등이 비교적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규정은 대략 11세기 후반에 다시 등장하고 있다. 즉 熙寧 7년(1074)에 飄風으로 諸州의 경계에 도착한 선박은 해당 관청에 즉시 보고하고, 근처의 市舶司에 보내어 물품의 榷買·세금 부과 및 分買를 명령하고, 동시에 泉州와 福州 연해의 선박이 賦買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박사에 이관하여 조사(勘驗)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37]

---

34) 『長編』 卷86, 大中祥符 9年 2月 癸卯條.
35) 『宋史』 卷487, 高麗傳 天禧 3年 11月條.
36) 『宋會要輯稿』 食貨38 互市 天禧 2年(1018) 11月條.
37) 『宋史』 卷186, 食貨下8, 互市舶法 熙寧 7年條.

여기서 말하는 표류 선박을 보고하는 해당관청은 市舶司(=지방장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38] 그리고 20여년 후인 元符 2年(1099)에 戶部는 표류하여 연해주의 경계에 도착한 蕃舶이 損敗되어 船主가 없는 경우에 官이 구조한 이후 物貨을 등록하고, 그 親屬이 사람을 불러 保任하면 인정하여 반환하며, 防守·盜縱·詐冒斷罪法을 입안할 것을 상주하였고, 神宗은 이를 裁可하고 있다.[39]

이상 송대 표류 海商(商船)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았다. 이들 규정에 의거하여 표류민의 漂着에서 송환까지의 절차를 구성하면, "㉮선박의 漂着→㉯해당관청(市舶司)에 보고→㉰官의 救濟→㉱市舶司로 이관→㉲인원·화물의 등록과 조사·처리(❶물품의 보관·榷買 및 分買, 반환 ❷세금부과 ❸시박사의 勘驗 ❹違制失條例 및 防守·盜縱·詐冒斷罪法 적용 등)→㉳담당관(시박사)의 중앙으로의 보고→㉴存撫(存問) 및 식량 지급→㉵渡海糧 지급→㉶俟便에 의한 송환"으로 정리할 수 있다.[40] 다음에는 이러한 법적 규정을 염두에 두고 표류민에 대한 실제 송환절차를 고찰하기로 한다.

---

38) 시박사는 송대 海商을 포함하는 해상무역 전체를 관리하는 기구로서 설치되었다. 송대 시박사의 주된 업무는 입항하는 海商이 소지한 화물의 교역을 관장하는 것 이외에 ①入港 外船의 검사·徵稅 및 화물의 보관 ②禁榷화물, 즉 전매품 및 기타 화물의 收買·出賣,보관 ③선박의 출항의 허가증 교부 ④화물의 판매허가증의 교부 ⑤蕃國 및 蕃舶의 유치와 送迎 ⑥출항시 銅錢 유출 단속 ⑦外舶의 출항시 금지물품의 유무 검사 등이 있고, 아울러 海商의 재산 보호, 상인의 소송을 윤허할 책임, 일반관리 및 시박관리의 부정 방지·근절과 居留蕃人을 관리할 책임이 있었다. 표류한 선박에 대한 관리도 시박사의 업무 가운데 하나였다. 宋代 시박사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는 藤田豊八, 「宋代の市舶使及び市舶條例」, 『東西交涉史の硏究·南海篇』, 講書院, 1932 ; 趙家齊, 『宋代交通管理制度硏究』, 河南大學出版社, 2002 참조.

39) 『長編』 卷510, 元符 2年(1099) 5月 甲寅條.

40) 표류민의 송환에서 마지막 절차에 해당하는 '㉶俟便에 의한 송환'은 법적 규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실례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俟便에 의한 송환'에 대하여는 후술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고려의 표류민(총 47건) 가운데 송에 표류한 사례는 19건이고, 일본은(총 12건) 5건이다. 그런데 이들 사례에는 표류민이 표착 즉시 행하는 '㉦해당 관청에 보고'에서 해당관청을 명시한 기사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표]에는 '㉤담당관(시박사)의 중앙으로 보고'에 해당하는, 표류민을 중앙(황제)으로 보고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兩浙轉運使㉗), 知明州(㉛),[41] 沿海制置使(㊻㊷) 등이 보인다.[42] 그렇다면 이들이 표착 표류민을 보고받는 해당관청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필자는 앞에서 해당 관청을 시박사라고 하였다. 그 근거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표류한 선박에 대한 관리도 시박사의 업무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표류민의 표착을 보고받는 해당관청이 다양해져서 문제는 복잡해진다. 그렇다면 여기서 해명되어야 하는 것은 兩浙轉運使, 知明州, 沿海制置使의 업무 및 이들 관직과 시박사와의 관계이다.

송대 시박사의 官制는 州郡兼任 시기(960~1080), 漕臣兼任 시기(1080~1102), 提擧專置 시기(1102~1270)라는 세 번의 변화를 겪었다.[43] 이러한 시박사의 관제 변화를 위의 관직과 대비시키면, 託羅國人

41) ㉛)에는 知明州가 없지만, 託羅國人 崔擧가 표착한 泉州에서 明州로 압송되었을 때, 그에 대한 구휼과 송환을 담당한 曾鞏의 직책은 知明州였다.

42) ㊷에 있는 家奴 張小斤三 등 6인의 표류에 대하여 식량지급과 귀국 조치를 한 吳潛(1196~1262)의 직책은 沿海制置大使判慶元府였다(張東翼, 『宋代麗史資料集錄』, 285쪽).

43) 시박사가 설치되기 이전 남방무역의 관리행정은 중앙의 小府監이 담당하였지만, 실제의 행정은 지방장관인 本道長史가 전담하였다(『唐會要』 卷66, 小府監條 顯慶 6年(661) 2月 16日勅). 송대도 唐의 제도를 이어받아서 시박사가 처음 설치되었을 때는 지방장관인 知州가 겸임하였지만(州郡兼任), 元豐 연간(1078~1085)에 처음 轉運司에게 提擧를 겸하게 하면서(漕臣兼任) 州郡은 간여하지 않게 되었고(『文獻通考』 卷628, 職官16 提擧市舶), 崇寧 초(1102)에 三路(廣南·福建·兩浙)에 각각 提擧官을 설치하여(『萍州可談』 卷2) 市舶을 전담시킴으로써(提擧專置) 이 제도는 북송말까지 계속되었다. 이상 시박관제의 변화에 대하여는 王輿文, 「略論宋代市舶制度」, 『白

崔擧가 표착한 시기는 1080년 전후이고(㉛), 이때는 지방의 장관이 시박사를 겸직한 州郡兼任 시기(960~1080)에 해당하기 때문에 知明州로 재임하던 曾鞏이 표류민에 대한 구휼과 송환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양절전운사와 연해제치사이다. 이들 관직이 시박사를 겸임한 것은 漕臣兼任 시기(1080~1102)이다. 그런데 양절전운사가 수주 화정현에 표착한 수군 행충을 상부에 보고한 해는 1076년이기 때문에 1080년에서 4년 전이 된다. 따라서 시기적으로는 양절전운사가 시박사를 겸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전운사가 漕臣으로서 지방 재정을 관리하고 관리의 부패를 감찰하는 일을 하였기 때문에[44] 천주에 표류한 金隄郡 水軍隊의 표류와 송환도 담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沿海制置使의 업무는 海島를 肅淸하고 수군을 절제하는 것이었지만,[45] 각 지역의 선박을 징발하여 兵船을 훈련시키고 연해를 순찰하여 해역을 안정시키는 역할도 하였다. 게다가 제치사는 按撫使를 겸직하는 것 이외에도 다른 지방업무도 겸직하였다. 이러한 까닭에 紹興 4년(1134)에 표류한 羅州人 光金을 구휼하고 송환시킨 郭仲荀과 寶祐 6년(1258)에 家奴 장소근삼 등을 신문하고 구휼한 吳潛은 연해제치사의 직책으로 이들 표류민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다. 결국 전운사와 연해제치사는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관이면서 원활한 국제무역을 위해 海域을 총괄하는 임무를 띠고 있었기 때문에 표류민의 구휼과 송환 업무도 담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다만 일본 표류민 사례에서는 이러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㉞官의 구제'도 고려·일본의 표류민 사례에서는 관련내용이 없기 때문에 海商을 포함한 일반 표류민의 구제를 전담한 기관을 알 수는 없다. 아마 이 업무도 앞서 언급한 兩浙轉運使, 知明州, 沿海制置使 등

城師範學院學報』17-1, 2003, 37~38쪽 참조.

44) 『宋史』 卷167, 職官志7 都轉運使條.

45) 『宋史』 卷167, 職官志7 制置使條.

이나 시박사 예속의 지방관이 담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46] 게다가 이 다음 단계인 '㉮市舶司로 이관→㉯인원·화물의 등록과 조사·처리(❶물품의 보관·榷買 및 分買, 반환 ❷세금부과 ❸시박사의 勘驗 ❹違制失條例 및 防守·盜縱·詐冒斷罪法 적용 등)'에서 ㉮市舶司로 이관과 관련된 사례는 전무하고, '㉯신원·화물의 등록과 조사·처리' 부분에서 표류 인원의 조사는 [표]에서 보듯이 비교적 자세하게 실시되고 있고, 화물에 대하여도 紹興 4년(1193)에 태주와 수주 화정현에 표착한 왜인에 대하여 송은 그 화물을 취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는 사례가 (53) 말해주듯이 인원 조사와 동시에 철저하게 조사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종결되면 '㉰담당관(시박사)의 중앙으로의 보고'가 행해졌다. 이는 [표]에서 보듯이, 중앙으로 보고한 내용에는 대부분 표류민의 표착과 신원에 대한 조사가 언급되어 있고, 이어서 황제의 詔書가 내려지고 있는 것과 부합한다.

다음에는 '㉮存撫(存問) 및 식량 지급→㉯渡海糧 지급→㉰俟便에 의한 송환'이라는 절차이다. 실제 일반 표류민 사례의 대부분은 ㉮㉯㉰에 집중되어 있다. 이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함평 3년(1000)에 海風으로 선박이 파괴되어 명주 鄞縣에 표착한 池達의 사례인데(⑪; 池達은 [표]에서 보듯이 사신 이외에 고려 출신으로서 최초의 표류자), 송은 그에게 貲糧을 지급하고 배편을 기다려 귀국시키고 있다. 이를 통하여 송의 표류민에 대한 식량지급과 송환은 초기부터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이 앞서 언급하였듯이, 大中祥符 9년(1016)에 정책화 되었고, 天禧 3년(1019)에 다시 재확인되었다. 실제 [표] ⑱에 의하면, 天禧 4年(1020)에 고려의 夾骨島民 闊達이 風漂하여 定海縣에 표착했을 때 이 규정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또한 여기서는 '準例'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서 이후 표류민에 대한 식량지급과 송환은 완전히 정착

46) 앞서 언급하였듯이, 표류 사신의 구제를 담당한 기관은 象山縣尉였다.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표]를 보면, ⑪의 활달 이외에도 표류민에게 식량을 지급하고 송환시킨 사례가 적지 않다. 따라서 식량지급과 송환은 표류민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조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표]에 의하면, 崑山縣에 표착한 30여 인(㉔), 秀州 華亭縣에 표착한 水軍 幸忠(㉗), 託羅國人 崔擧(㉛), 家奴 張小斤三 등 6인의(㊷) 표류 사례에는 '식량지급과 송환' 이외에 다른 조처도 보인다. 우선 嘉祐 연간에 崑山縣에 표착한 30여 인과 熙寧 9년(1076)에 秀州 華亭縣에 표착한 水軍 幸忠의 경우에는 그의 衣冠 착용과 언어·문자의 사용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다. 이는 표류민에 대하여 세밀한 신문·조사가 진행되었음을 말해주는데, 이러한 신문과 조사는 당시 정보 획득에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었음을 말해준다. 그런데 수군 행충의 경우에는 그의 진술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奸細가 아니면 식량을 지급하고 본국으로 송환시키고 있다. 여기까지는 앞서 살펴본 규정과 큰 차이가 없지만, 행충의 사례에서 주목되는 새로운 내용은 표착민을 官舍에 거주시킨 점, 송환 때 본국의 使人을 이용하고 있는 점이다.

다음에 살펴볼 崔擧와 張小斤三의 사례는 송이 진행한, 표류민에 대한 표착에서 송환까지의 절차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우선 託羅國人 崔擧는 曾鞏이 知明州로 재직하던 元豊 연간(1078~1085에 飄風으로 표류하다 泉州에 표착하였다. 이 최거에 대한 송의 조처를 보면, 우선 천주에서는 표류민을 明州로 押送하고 있고,[47] 이 과정에서 沿路口券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 흥미롭다. 최거가 명주에 도착한 이후 知明州인 증공이 취한 조처는 酒食 지급, 僧寺로의 호송·安泊이다. 게다가 본 사례에는 증공이 표류민에게 취한 조처가 열거되어 있는데, 그것은 酒食 지급, 安泊시에 食物과 의복 지급, 水陸에 따른 鞍馬·舟船의 대

47) 후술하지만, 이때 송환지는 명주단일체제였기 때문에 명주 이외의 지역에 표착한 표류민은 명주로 押送되었다.

여, 본국으로의 귀환을 요청할 때 허용 등이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하였듯이, 嘉祐 6년(1258)에 명주 석형산에 표류한 家奴 張小斤三 등 6인의 표류에 대하여는 연해제치사 吳潛이 신문을 한 이후에 그 내용을 상급기관에 보고하고, 이어서 관청에서는 매일 米錢이 지급되었고, 귀국시에는 還國에 필요한 여비가 지급되고 있다. 한편, [표]에는 없지만, 흥미로운 기사가 있다. 즉 嘉祐 연간에 1척의 外船이 風濤로 표류하여 蘇州에 이르자, 관부에서는 생활상의 도움을 제공한 이외에 배도 수리해주었다.[48]

마지막으로 '㉮俟便에 의한 송환'이다. [표]에 보이듯이, 송이 고려 표류민을 송환할 때 俟便 또는 그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사례는 ⑪(俟便), ㉗(候有本國使人), ㉛(候有便船), ㊻(俟便舟) 등이 있다. 이러한 표현은 송에서 표류민을 송환할 때, 표류민 본국의 배편을 이용하였음을 말해준다(후술하지만 고려·일본은 지방관이 직접 護送·押送). 그런데 그 배편은 본국의 使臣이 입조하면 그 편을 이용하는 것이 있고(㉗), 宋商(都綱)과 동행한 사례가 있다(⑱). 이처럼 송의 표류민 송환에서는 使臣便과 商人便이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다. 문제는 어느 쪽이 일반적인가 하는 점인데,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 시기 형성된 市舶司체제에서 상인이 해상교역의 중심이었던 것을[49] 고려하면 후자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는 일본 표류민에 대한 송환절차이다. 일본 표류민에게도 고려 표류민과 같이 식량지급과 송환이라는 조처가 취해지고 있다(㊶). 다만 일본 표류민의 경우에 고려와 다른 점은 식량으로서 常平義倉錢(㊷)·常平米(㊹)가 지급되고 있는 점이다.[50] 또한 至元 18년(1281)에

48) 『夢溪筆談』上(張晉藩 主編, 『中國法制史』 5卷 宋, 法律出版社, 1999, 435쪽에서 재인용).
49) 앞의 주 8) 참조.
50) 그렇다면 앞서 언급한 고려 표류민에게 지급된 식량도 常平米·錢일 가능

元에 표착한 日本船에 대하여 원은 手工에게 일본국에 대한 지도를 제작시키고 있고(㊼), 그 내용도 상당히 자세하다. 이는 앞서 송의 고려 표류민에 대한 조처처럼 표류민에 대한 조사・신문이 시행되고 있었음을 증빙한다. 또한 일본 표류민 사례에서도 송환절차가 일부 명시되어 있다. 즉 紹興 4년(1193)에 태주와 수주 화정현에 표착한 倭人에 대하여 송은 그 화물을 취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이후 이들의 중국 내에서의 출항지까지의 과정이 묘사되어 있다(㊹). 마지막으로 송은 淳熙 3년(1183)에 明州에 표착한 일본인을 송환할 때, 일본배를 이용하고 있다(㊶). 이를 통하여 일본 표류민에 대하여도 '㊽俟便에 의한 송환'이라는 마지작 절차가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 송의 고려・일본 표류민 송환절차를 법규정과 실례를 대비시켜 살펴보았다. 송은 표류민의 표착에서 송환까지 일정한 단계별 절차가 법규로서 어느 정도 구비되어 있고, 그것이 실제의 사례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표착에서 송환까지'의 절차에서 최후의 조처는 '송환'이고, 그 결과를 중앙에 보고하는 형식이 빠져 있는 점이다. 아마 표류민에 대한 송환조처가 법규화된 이상 그 결과를 중앙에 보고할 필요가 없었을 가능성도 있다. 여하튼 이는 표류민의 송환이 지방에 위임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임은 분명하다고 생각된다.[51] 다만 자국(송)의 표류민이 송환되었을 때는 어떠한 보고체계가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와 실례가 없기 때문에 확인하기 어렵다.

2) 고려

이 시기 고려의 표류민에 대한 송환절차를 고찰할 경우에는 다음과

성이 있다.

51) 실제 1020년에 고려 夾骨島民 闊達이 명주 定海縣에 표류했을 때, 存撫와 송환을 지시하면서 이후 이러한 예에 준거해서 송환하도록 명령하고 있는 것은 제도적으로 중앙에 보고하지 않는 것이 관례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같은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는 송과 같이 그것을 명시한 법규가 법규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표류민 송환절차를 구명하는데 가장 큰 난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고려에서도 송대와 같이 표류 선박의 漂着에서 송환까지의 절차가 시행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란 쉽지 않다. 둘째는 관련 사료의 부족이다. [표]에서 보듯이, 고려에 표착한 일반 표류민은 전체적으로 총 8건에 불과하고, 게다가 중국은 遼 1건이고, 일본이 7건(㊾㊶㊸㊹㊺㊽㊿)이다. 따라서 고려의 일반 표류민 송환조처는 일본인을 중심으로 고찰할 수밖에 없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염두에 두고 본고에서는 일단 송의 절차를 준용해서 고려의 표류민에 대한 조처를 검토한다. 우선 '㉮선박의 표착' 다음 단계인 '㉯해당관청(시박사)에 보고'에서 보고를 받는 해당관청을 명기한 기사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표]에는 일본이 自國에 표류된 고려인을 송환하였을 때, 고려에서 중앙에 보고하는 기관이 나오는데, 東南海船兵都部署(㉓㉕), 金州防禦官(㊵), 慶尙道按察使(㊻)가 그것이다. 이는 송의 표류민 송환절차 가운데 '㉰담당관(시박사)의 중앙으로 보고'에 해당한다. 이 시기 동남해선병도부서는 海上의 군사와 對日本관계 문제 등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52] 표류민의 송환도 담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고종 30년(1243)에 일본국이 표류민을 송환했을 때는 금주방어관이 보고하고 있다. 당시 동남해선병도부서가 금주에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금주방어관이 보고했다는 것은 일본과의 교섭에서 금주방어관이 표류민 송환의 실질적인 담당관이었음을 말해준다. 그런데 한편으로 元宗 10년(1269)에 일본으로부터 송환된 제주출신 표

52) 동남해선병도부서의 치소는 고려 초에는 慶州에 있었지만 文宗 32년(1078)에 金州(현재의 김해)로 이전되었다(金好鍾, 「東南海都府署의 設置와 그 機能-金州本營을 中心으로-」, 『民族文化論叢』 20, 1999, 99쪽). 일본 對馬島官이 고려의 표류민을 金州로 押送하였을 때, 동남해선병도부서가 보고한 것은 文宗 3년(1049)이고, 따라서 이 때 동남해선병도부서의 치소는 慶州에 있었다.

류민이 장차 일본이 고려를 寇掠할 것이라고 전하자 慶尙道按察使가 중앙에 보고하고 있다.[53] 이러한 보고체계를 고려하면, 고려의 표류민 송환의 담당관은 금주방어관과 경상도안찰사라는 이원적인 구조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위의 절차 가운데 '㉰官의 救濟→㉱市舶司로 이관'에 해당하는 사례도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인원·화물의 등록과 조사·처리(❶물품의 보관·榷買 및 分買, 반환 ❷세금부과 ❸시박사의 勘驗 ❹違制失條例 및 防守·盜縱·詐冒斷罪法 적용 등)'에서 인원의 등록과 조사·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도 없다. 다만 충렬왕 18년(1292)에 원의 江南漕運萬戶 徐興詳 등에 대하여 그 표류 경위를 서술하고 있는 사례(㊾) 등에서 보듯이 표류경위와 인원수에 대하여는 비교적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표류민에 대한 조사는 철저하게 시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元宗 10년(1269)에 경상도안찰사가 중앙에 보고한 이유는 일본에서 송환된 제주 표류민을 통하여 일본이 장차 고려를 寇掠하려 한다는 정보 때문이었다(㊻). 이는 송환된 자국의 표류민에게서 입수한 정보이지만, 고려에 표착한 他國의 표류민에게서도 동일하게 조사·신문을 통하여 정보를 입수하였음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고려에서도 표류민의 신문이 정보를 입수하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화물의 등록과 조사·처리에 대하여도 그것을 직접 언급한 사례가 없어서 자세한 것은 알기 어렵지만, 이를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는 것은 표류민에 대한 지방관의 私的인 搾取에 대한 처벌 사례이다(㊶). 이에 의하면, 1244년에 前濟州副使 盧孝

53) 경상도안찰사가 보고한 것은 표류민으로부터 '일본의 침략'이라는 긴급한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이고, 따라서 표류민의 송환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후술하지만, 전라도안찰사가 일본 표류민을 송환시키고 있는 것에서 경상도안찰사도 표류민의 송환을 담당하였을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貞과 判官 李珏은 在任 때에 颶風으로 州境으로 들어온 日本商船에 대하여 綾絹·銀珠 등을 私取한 죄목으로 銀珏의 징수와 동시에 流島刑에 처해지고 있다. 이처럼 지방관이 표류를 중앙에 보고하지 않고 私取한 것에 대하여 법률로 처벌하고 있는 것은 국가가 표류민이 소지한 화물에 대하여 철저하게 조사·관리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고 하겠다.[54]

다음은 '㉱담당관(시박사)의 중앙으로의 보고→㉲存撫(存問) 및 식량 지급'이다. 이 가운데 '㉱담당관(시박사)의 중앙으로의 보고'는 앞서 東南海船兵都部署(㉓㉕), 金州防禦官(㊿), 慶尙道按察使(㊻)가 담당하고 있었음을 언급하였다. 그 이후의 단계는 '㉲存撫(存問) 및 식량 지급→㉳渡海糧 지급→㉴俟便에 의한 송환'이다. 고려의 일본 표류민에 대한 조처 가운데 적은 사례에서도 가장 흔히 보이는 것이 이 부분이다. 그렇다면 고려의 표류민에 대한 식량지급과 송환은 송과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적인 규정이었다고 하겠다.[55] 다만 특이한 것은 고려에서 표류민을 송환할 때 송과 같이 '㉴俟便에 의한 송환' 방식을 취하지 않고 지방관이 직접 護送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송과의 뚜렷한 차이이다(후술하지만 일본은 고려와 유사).

---

54) 『高麗史』 卷21, 熙宗 元年 8月條에 의하면, 고려는 宋의 商船이 禮成江을 입항할 때, 監檢御史 安琓이 선박의 물품을 보고는 규정을 어긴 宋商 數人을 잡아서 笞刑을 부과하였는데, 너무 심하여 崔忠獻이 안완을 파면하고 있는 것에서 官吏에 대한 통제정도를 알 수 있다.

55) 이러한 고려의 표류민에 대한 양식지급과 호송은 被虜人에 대한 조처에도 보인다. 즉, 開慶 元年(고려 高宗 46년, 1259)에 宋商 范彦華의 선박이 고려에서 송으로 돌아왔는데, 몽골에 사로잡혔던 남송 被虜人 3명을 함께 데려왔다. 그들은 몽골의 고려와의 전쟁에서 도망한 사람들로서 산속에 피신하였다가 몽골군이 물러난 이후 고려국왕을 배알하였다. 이때 고려에서는 漢語都監에서 숙식하게 하고 후에 이들을 본국으로 송환할 때 양식 3석을 제공하고 있고, 禮賓省은 慶元府(明州)에 牒을 보내고 있다(『開慶四明續志』 卷8, 收刺麗國送還人).

그리고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표류민의 송환을 각 지역의 지방장관이 분담하고 있는 점이다. 앞서 경상도 지역의 표류민에 대한 송환은 금주방어관과 경상도안찰사가 분담하고 있었다. 표류민의 송환에서 이러한 이원적인 구조는 송에서는 볼 수 없는 고려만의 독특한 방식인데, 이는 표류자의 신분에 따라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56] 경상도 이외의 지방관이 표류민을 송환하고 있는 사례를 보면, 元宗 4년(1263)에 求法을 위해 송으로 가던 일본 官船大使 如眞 등이 群山・楸子島에 표착한 경우(㊸), 宋에서 일본으로 가던 大宰府少卿殿의 商船이 표풍으로 失船하여 宣州 加次島에 표착한 경우(㊹), 이들에게 식량을 지급하고 또 본국으로 호송을 담당한 것은 全羅道按察使였다. 물론 이 두 개의 자료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는 고려에서도 표류민의 송환이 각 지방관의 분담체제였음을 시사한다. 한편 ㊸의 기사에서 흥미로운 것은 전라도안찰사의 표류민 송환 조처가 중앙의 명령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점이다. 이는 표류민의 송환이 철저하게 지방관 단독으로 처리되고 심지어 그 결과도 중앙에 보고하지 않는 송・일본(후술)과 현저히 다른, 고려만의 특징이다.

3) 일본

일본에 표착한 일반 표류민은 고려가 19건이고, 원은 1건(㊾)에 불과하다. 따라서 일본의 일반 표류민 송환조처도 고려 표류민을 중심으로 고찰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본고에서는 송・고려와의 異同點을 도출하기 위해 일본의 고려 표류민에 대한 송환조처도 앞서 제시한 송의 절차에 입각하여 분석한다. 다만 일본도 고려와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56) 張東翼, 「14世紀의 高麗와 日本의 接觸과 交流」, 『大丘史學』 100, 2010, 14쪽, 주 7)에서는 고려시대 일본의 교섭창구인 金州에서 일본과 접촉한 官署 또는 관직은 金州府使⇔對馬島島司, 慶尙道按察使⇔大宰府總管(守護所)이라 하고 있다.

법규가 구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표류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표]에 보이듯이, 일본의 고려 표류민에 대한 표착에서 송환까지의 절차 가운데 '㉮선박의 표착' 이후 '㉯해당관청(시박사)에 보고'는 송·고려와 동일하게 시행되고 있고, 해당관청은 고려인이 표류한 지역의 장관이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에는 송·고려와 달리 보고체계(곧 표류민 송환 담당체계)를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는 사례가 있다. 1031년 耽羅人 白達 등 9인이 일본에 표착했을 때, 流來者에게 식량을 지급하고 송환을 명령한 것은 大宰府였다(⑳). 이는 일본에서 일반 표류민을 담당하는 중앙의 부서가 대재부였음을 말해준다. 그리고 이 사례에 보이듯이, 일본도 표류민에 대하여 식량을 지급하고 송환시키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에서도 식량지급과 송환('㉱存撫(存問) 및 식량 지급→㉲ 渡海糧 지급→㉳候便에 의한 송환')은 표류민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조처였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 사례에는 표류민에 대한 조사와 신문도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 사례에서 표류민이 진술한 내용의 차이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일본의 표류민에 대한 신문이 상당히 철저하였음을 말해준다. 여하튼 이러한 점에서 일본에서도 송과 마찬가지로 '㉰인원·화물의 등록과 조사·처리'가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57]

그런데 위의 사례에서 주목되는 것은 대재부에서 關白이 傳示·명령한 내용 가운데 "異國人이 의심되는 것이 없으면 言上을 거치지 않고 식량을 주어 송환시키는 사유를 格文으로 알렸다"는 부분이다. 이는 표류민의 송환을 지방에 위임하는 조처로 보인다. 그렇다면 일본에서는 표류민의 송환업무가 1031년을 기점으로 중앙에서 지방으로 위임되었

57) 일본의 표류민에 대한 신문·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는 1019년 筑前國에 표착한 末斤達(⑮), 1224년 越後國 寺泊浦에 표착한 고려인(㊻) 등이 대표적이다.

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방위임제도는 송과 유사하다. 그리고 일본은 1049년 대마도에 표착한 고려 표류민을 對馬島官이 首領에게 押送시키고 있고(㉓), 또 1060년에는 使臣(對馬島官이 파견한 사신)을 통하여 송환시키고 있다(㉕). 이로써 표류민의 송환을 주도하였던 지방관은 대마도관이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위의 두 사례에서 흥미로운 것은 대마도관 예하의 官吏가 표류민을 押送하고 있는 점이고, 이는 고려와 유사하다.

Ⅲ. 송환체제에 보이는 동아시아 교통권의 구조와 특성

Ⅱ장에서는 10~13세기 동아시아에서 발생한 표류민에 대하여 송·고려·일본이 시행한 조처를 비교분석하여 각국의 표류민의 漂着에서 송환까지의 절차와 그 異同點 등을 도출하였다. 본 장에서는 一國의 경계를 넘어 동아시아지역 전체를 시야에 넣어 송환체제에 보이는 교통권의 구조와 특성을 구명하고자 한다. 그것을 위해 본고에서는 표류민의 표착과 송환 시기를 검토하여 계절별 항해시기를 도출하고, 이어서 표류민의 표착지·송환지와 출신지를 분석하여 송·고려·일본 간에 이용된 항로를 구명하고자 한다.

첫째, 표류민의 표착과 송환 시기를 살펴보기로 한다. [표]에 의하면, 使臣과 商人을 포함한 일반민의 표착은 9월이 다수를 차지하지만, 송환의 경우 宋에서 高麗로의 송환은 5월~8월 사이, 일본에서 고려로의 송환은 7월~9월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다. 高麗·宋·日本의 계절별 항해를 보면, 10세기 후반에서 13세기 후반에 걸쳐 고려에서 송으로는 11월~12월이고, 반대로 중국에서 고려로는 6월~8월이었다.[58] 일본선박은 博多에서 五島를 거쳐 明州 등으로 향하였고, 항해 시기는 1월에

58) 徐兢, 『高麗圖經』 卷39, 海道6 禮成港條.

서 3·4월, 9월에서 11월이었으며, 반대로 송에서 일본으로는 5월~8월이었고, 고려에서 일본으로는 7월~9월이었다.[59] 이를 표류민의 표착시기와 송환시기를 비교하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둘째, 표류민의 표착지·송환지와 출신지에 보이는 송·고려·일본 간에 이용된 항로이다. 이는 [표]에 제시된 표착지·송환지, 출신지를 통하여 그 대략을 알 수 있다.

먼저 송이다. 이 시기 송에서의 고려・일본 표류민의 표착지와 송환지에서 주목되는 것은 표착지와 송환지가 시기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송에 표착한 고려・일본(契丹 등은 제외) 표류민의 표착지는 安香浦口(⑨: 明州), 觀縣(⑪: 明州), 定海縣(⑱: 明州), 崑山縣(㉔: 蘇州), 海門縣(㉖: 通州), 華亭縣(㉗: 秀州), 泉州(㉛), 泰州・楚州 경계(㊻), 明州(㊶), 石衙山(㊷: 明州) 등 동남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그런데 송환지는 표착지와 관계없이 1020년 이전은 登州이지만(⑨⑪: 표착지는 明州), 그 이후는 모두 明州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宋에 표착한 표류민의 송환지는 11세기 초를 경계로 등주에서 명주로 이행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송환지의 변화에서 고려해야 할 것은 고려・일본에서 송으로 입항하는 사신의 終着港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이다. 주지하듯이, 송 초기부터 중국으로 입항하는 高麗使・日本使의 入出港口는 登州였지만, 국교단절을(1030년) 거쳐 1071년에 다시 通交가 再起된 이후 1074년에 이르면 明州가 송의 유일한 대외교섭창구가 되었다.

이처럼 송에 출입하는 사신의 공식적인 입출항지는 1074년을 경계로 등주에서 명주로 이행되었다. 위에서 인용한 표류민의 표착지에서,

---

59) 宋・高麗・일본의 계절별 항해에 대하여는 裵淑姬, 앞의 논문, 73~75쪽 참조.

1074년 이전에는 표착지가 安香浦口(⑨: 明州), 覲縣(⑪: 明州)임에도 송환지가 登州로 되어 있는 점, 그리고 그 이후[華亭縣(㉗: 秀州)~石衕山(㊷: 明州)] 표착지는 다양하지만 송환지가 명주로 단일화되어 있는 점은 송의 이러한 대외교섭창구의 변화를 말해준다.

둘째는 고려이다. 고려의 표류민 사례에서 일본인의[60] 표착지는 耽沒羅 阿私山下(㊾) 濟州(㊶) 開也召島·群山·楸子 等(㊸) 宣州 加次島(㊹) 龜州 艾島(㊺) 耽羅(㊽)뿐이고, 게다가 송환지를 명기하고 있는 사례는 없다. 다만 앞서 언급하였듯이, 일본은 자국에 표류된 고려인을 주로 金州로 송환하고 있다(㉓㉕㊵). 金州가 송환된 표류민을 인계받은 곳이라고 하면, 고려 경내에 표착한 표류민의 송환지였을 가능성도 매우 크다. 그런데 문제는 金州 이외의 송환지가 존재했는가 하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㊸㊹와 ㉕이다. 이 가운데 전자를 보면, 群山·楸子島에 표착한 官船大使 如眞 등과(㊸), 宣州 加次島에 표착한 大宰府少卿殿의 商船을(㊹) 송환한 이는 全羅道按察使였다. 그렇다면 전라도안찰사 관할 지역 내에 송환지가 존재했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안찰사가 중앙에서 南方의 5道에 파견된 使職인 이상 항상적으로 표류민의 송환을 담당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후자의 ㉕를 보면, 文宗 14년(1060)에 對馬島에서 고려 飄風人 位孝男을 송환하였는데, 위효남은 禮成江民이면서 송환된 곳은 金州였다. 이 하나의 사례로써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이 시기 고려에 표착한 표류민의 송환지는 金州 단일체제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당시 고려의 對日公式 涉外창구는 금주단일체제로서 운영되었다고 결론내릴 수가 있다.[61]

---

60) 앞서 언급하였듯이, 고려에 표착한 표류민 가운데 宋人은 주로 사신 이외에는 없고, 元人도 군인 이외에는 없으며 게다가 표착지나 송환지를 명시하고 있는 사례도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본 표류민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61) 앞서 주 55)에서 언급하였듯이, 몽골에 사로잡혔다가 고려에 온 남송 被虜人 3명을 南宋으로 송환할 때, 禮賓省이 慶元府(明州)에 牒을 보내고 있는

셋째는 일본이다. 일본에 표류한 고려인의[62] 표착지는 隱岐國(④), 筑前國(⑦⑮), 石見國·但馬國(⑩), 因幡國(⑬), 大隅國(㉑), 越後國(㊻) 등이고, 송환지는 對馬島가(㉓㉕) 있다. 이를 통하여 일본의 표류민 송환지는 대마도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일본의 對高麗公式 涉外창구는 對馬島단일체제로서 운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63]

이상 살펴보았듯이, 이 시기 동아시아를 구성하는 송·고려·일본의 송환지는 明州(초기에는 登州와 명주 이원체제, 1074년 이후 명주단일체제)·金州단일체제(고려)·대마도단일체제(일본)로 되어 있었다. 이들 송환지는 당시 각각 대외교섭창구의 역할도 겸하였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러한 송환지이자 대외교섭창구 역할을 하였던 명주·금주·대마도와 연결된 교통로(항로)를 보기로 한다.[64] 이는 동아시아 교통

것에 보면, 金州를 통제하는 상급관청(중앙)은 開城(開京)의 禮賓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고려 개경에서는 禮成江 하류의 碧瀾渡가 무역항으로 번창하였음이 이미 알려져 있다(金庠基, 「高麗前期의 海上活動과 文物의 交流」, 『國史上의 諸問題』4, 國史編纂委員會, 1959).

62) 앞서 언급하였듯이, 일본에 표착한 표류민은 대부분 고려인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고려인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63) 대마도의 상급관청은 [표]⑫⑰에 보이는 大宰府이다. 일본은 10세기 이후 博多를 유일한 교역장, 鴻臚館(11세기 중엽까지 존속)을 客館으로 하는 대재부 교역이 시행되었다. 大宰府는 외교를 관장한 지방관청으로서 福岡縣 대재부시에 설치되었고, 서해도의 9國·3島(對馬·壹岐) 등을 총관하고, 군사와 외교를 겸하는 등 지위가 파격적이었다. 大寶令 職員令에 의하면 장관은 從3位 상당의 帥, 차관은 大貳, 이하 少貳, 大監, 少監, 大典, 少典의 4등관, 기타 합쳐 6백인 규모의 구성을 이루었다. 그러나 1132년부터 장관·차관은 부임하지 않고, 실권은 在地의 大監·少監에게 이양되었고, 또 1226년에 眞西奉行의 武藤資賴가 少貳를 겸하면서 鎌倉幕府의 九州지배가 완성되었다. 大宰府에 대한 국내 논고로는 朴昔順, 「大宰府의 대외관련 업무 사례연구」, 『歷史學報』 180, 2003 참조.

64) 종래의 연구에 의하면, 한반도와 중국을 연결하는 航路는 크게 북방항로[북중국연안항로: 蓬萊(登州)—長山島(大謝島)—龜欽島—遼東半島—鴨綠江口—大同江口—서해안 항구], 서해(황해)횡단로(登州—東牟—八角海口

권에 내재하는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먼저 송과 고려 간의 교통로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고려・일본 표류민의 송에서의 표착지는 동남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는 이 시기 한반도와 중국을 연결하는 해상교역로(航路) 가운데 공식 使行路 이외에 남방(남중국)항로(明州—黃海—黑山道—西海岸—禮成江—急水門—碧瀾渡—開京)가 적극 이용되었음을 말해준다. 그리고 표류민의 대다수가 상인(海商)인 점을 고려하면, 남방항로는 海商路라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하였듯이, 동남지역에 표착한 표류민의 송환지는 1074년을 기점으로 登州에서 明州로 단일화되었다. 이를 통하여 볼 때, 남방항로의 송에서의 起着地는 明州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明州 定海縣에 표착한 고려 夾骨島民 闍達의 경우를 보면(⑱), 표착 시기가 1074년 이전(1020년)이기 때문에 송환지가 登州여야 하지만 明州로 되어 있다. 따라서 남방항로는 그 이전부터 이미 활발히 이용되고 있었다는 견해는[65] 설득력이 있다. 이 시기 송에 표류된 고려인의 출신지는 탐라(屯羅島・託羅・濟州 등 포함)가 11건(⑲⑳㉔㉘㉙㉛㉞㊱㊲㊽㊻)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이밖에 羅州 2건(㉝㊻), 夾骨島 1건(⑬), 禮成江 1건(㉕) 于陵島 1건(: 현재의 울릉도⑬), 珍島 1건(㊶)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출신지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康州에서 출항하여 표류된 사례도

—芝岡島—甕津口—海州—閣州—白州—開京), 남방(남중국)항로(明州—黃海—黑山道—西海岸—禮成江—急水門—碧瀾渡—開京)가 있었고, 고대에서 唐末까지 한・중을 연결하는 중심 항로는 북방항로와 서해횡단로였지만, 10세기 초에 북방에서 거란의 흥기로 북방해역의 이용이 어렵게 되자, 11세기 초부터는 남중국 연안의 明州・泉州・廣州 등이 대외무역의 중심지로 부상함과 동시에 남방항로가 적극 이용되었다고 알려져 있다(국제정세에 따른 송—고려 항로의 변화에 대하여는 金渭顯, 「麗宋關係와 그 航路考」, 『關大論文集』 6, 1978 참조).

65) 申採湜, 「唐末・五代의 東南沿海地域과 韓半島의 海上交涉」, 『東國史學』 4, 2000, 176~177쪽 ; 金澈雄, 「高麗와 宋의 海上交易路와 交易港」, 『中國史硏究』 28, 2004, 111~113쪽.

(⑮) 있다. 여하튼 이러한 다양한 출신으로 되어 있는 고려 표류민은 모두 남방항로를 통하여 고려에 송환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고려 표류민은 남방항로를 이용하여 중국과 교역하기 위해 항해하던 중에 표류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논점이 타당하다면, 당시 송과 고려에서 전개된 표류민의 송환 루트는 남방항로와 일치한다고 하겠다(다만, 고려에서의 기착지에 대하여는 [표]에 관련사례가 없어서 확인하기가 어렵다).

다음에는 고려와 일본 간의 교통로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일본에 표착한 고려인은 출신을 불문하고 대부분 對馬島에서 金州로 송환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고려·일본 간의 교통로는 금주—대마도로 연결되는 루트를 예상할 수 있다. 실제 금주는 일본과 인접하여 일본의 列島세력이 동아시아로 향하여 처음 도달하는 요충지였다.[66] 이 금주에도 商館이 설치되었고, 특히 對馬島人이 무역을 위해 출입이 잦았으며,[67] 당시 왜구가 자주 침입한 곳이기도 하였다.[68]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일본에 표착한 표류민의 대부분이 耽羅民이라는 점이다. 실제 탐라는 일찍부터 商館이 설치되는 등 서남지역 상업 활동의 요충지였다.[69] 또한 비록 13세기 후반의 사례이지만, "濟州는 海外의 巨鎭으로 宋商·島倭가 無時로 往來하였다"라하고 있

66) 武田幸男 編譯, 『高麗史日本傳(上)』, 岩波書店, 2005, 46쪽. 이에 의하면, 太祖 23년(940)에 金海府, 후에 臨海로 개명되었고, 成宗代에 金州安東都護府, 顯宗代에 金州라고 칭했으며, 다시 金寧都護府, 金州牧, 金海府 등으로 개명되었다.

67) 但對馬島人 時因貿易 往來金州耳(『高麗史』 卷26, 元宗 8年(1267) 春正月條).

68) 왜구의 金州 구략 사례는 적지 않지만, 몇 개를 들면, 倭寇金州(『高麗史』 卷22, 高宗 10年(1223) 5月 甲子條) ; 倭船二艘 寇慶尙道沿海州縣 發兵 悉擒之(『高麗史』 卷22, 高宗12年(1225) 夏4月 丙戌條) 등이 있다.

69) 내륙의 상인들이 탐라에서 상업활동을 한 사례는 『高麗史』 卷13, 睿宗 8年(1113) 6月 庚戌條에 보인다.

다.[70] 여기의 宋商・島倭는 남송의 상인과 對馬・壹岐의 島人을 가리키고 있다.[71] 따라서 당시 탐라는 남송뿐만 아니라 對馬・壹岐 등 일본과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다. 이러한 탐라 출신 표류민이 금주에 송환되고 있는 점을 아울러 생각하면, 당시 고려・일본 간의 교통로는 耽羅—金州—對馬島라는 루트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하겠.

Ⅳ. 맺음말

본고는 10~13세기 동아시아 교역권에 보이는 여러 특징 가운데 표류민의 실태와 송환체제를 분석하여 이 시기 형성된 교통권의 구조와 특성을 구명하였다.

1. 표류의 실태와 특징

이 시기 동아시아를 구성하는 高麗・宋元・日本(倭) 가운데 표류민의 대부분은 고려인이었다. 이는 氣象知識과 航海術의 優劣, 造船術의 우열 등의 영향도 있지만, 고려가 해양에 대한 지식과 항해술, 조선술에서 송・일본보다 열악하여 표류민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였다. 표류민의 身分은 使臣, 海商(商船・賈胡 포함), 僧侶, 軍人, 家奴, , 漁夫 등 다양하지만, 人・民으로 표기된 일반민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당시 동아시아 해역권은 海商에 의한 민간교역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점에서 이들도 대부분 海商이었다.

표류민의 시기별 발생 빈도를 국가별로 분류하면, 송은 1123년을 기점으로 그 이후에는 보이지 않고, 원은 13세기 말에 국한되어 있었다. 게다가 이들의 신분도 사신이 대부분이고, 일반 표류민 그 가운데 특히

70) 『高麗史』 卷25, 元宗 元年(1260) 2月 庚子條.
71) 武田幸男 編譯, 앞의 책, 60쪽, 주 4).

이 시기 海商활동을 주도하였던 宋商은 1건에 불과하였다. 일본 표류민은 모두 1176년 이후에 발생하였고, 그 이전에는 한 건도 없으며, 표류민의 신분은 상인이 대부분이었다. 漂流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고려의 경우, 표류시기는 顯宗代(1010~31년)를 기점으로 급격한 증가를 보였다. 게다가 고려 표류민의 신분을 시기별로 분류하면, 使臣은 11세기 이전에 집중되어 있고 그 이후는 보이지 않으며, 그 대신 12세기 초 이후는 商人이 대부분이였다.

이상과 같이 10~13세기 동아시아 교역권에서 발생한 표류민의 신분은 使臣, 상인(海商), 僧侶, 軍人, 家奴, 漁夫 등 다양하였지만, 이 표류민의 신분구성은 12세기 중후반을 경계로 使臣에서 상인으로 그 중심이 이동되었다. 이러한 표류민 신분의 중심이동은 이 시기 동아시아 대외교역시스템의 互市體制(公貿易體制/國家管理體制)에서 市舶司體制(私貿易體制/民間交易體制)로의 전환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었다.

2. 사신의 표류와 송환 절차

이 시기 총 70건의 표류 사례에서 使臣의 표류는 16건이고(약 23%), 이를 국가별로 분류하면 고려가 8건, 중국이 7건, 일본이 1건 순이다.

송에 표착한 사신 가운데 高麗使에 대한 송의 조처를 분석한 결과 송에서 시행한 표류 사신의 표착에서 송환까지의 절차는 "㉠선박의 漂着→㉡官의 救濟→㉢訊問·조사(❶표착사신의 上表 ❷표실 공물 처리)→㉣담당관의 중앙으로의 보고→㉤중앙에서의 사신 파견→㉥存撫와 上京 지시→㉦의복·예물 등 지급→㉧송환→㉨(사신) 本國으로 詔書 지급"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고려의 표류사신에 대한 조처는 肅宗 8년(1103)에 표류한 宋使를 金漢忠이 이를 救濟한 사례에서 '㉡官의 救濟'가 시행되었고, 또한 당시 김한충의 직책이 禮部尙書라는 점에서 고려에서 표류사신의 구제에 禮部尙書가 관련이 있었던 것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光宗 14년(963)에 고

려에 冊命使로 파견된 時贊의 사례에서 '㉥存撫와 上京 지시'와 '㉦의복·예물 등 지급'이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일본의 경우에는 '㉢訊問·조사'와 '㉣담당관의 중앙으로의 보고'가 시행되었고, 특히 1019년에 對馬島에서 筑前國으로 표착한 고려 사신단의 유래가 명확하지 않아서 大宰府에서 安東都護府에 문의했다는, 일본 독자의 조처 정도가 확인되었다.

3. 일반민의 표류와 송환 절차

송대 표류민의 송환은 "㉮선박의 漂着→㉯해당관청(市舶司)에 보고→㉰官의 救濟→㉱市舶司로 이관→㉲인원·화물의 등록과 조사·처리(❶물품의 보관·榷買 및 分買, 반환 ❷세금부과 ❸시박사의 勘驗 ❹違制失條例 및 防守·盜縱·詐冒斷罪法 적용 등)→㉳담당관(시박사)의 중앙으로의 보고→㉴存撫(存問) 및 식량 지급→㉵渡海糧 지급→㉶俟便에 의한 송환"이라는 절차가 법(勅書·詔書 포함)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송의 표류민에 대한 송환은 지방에 위임되어 있었고, 그것을 전담한 것은 대외 섭외창구인 明州의 市舶司였다. 이러한 표류민에 대한 법적 송환절차는 실제의 사례에서도 어느 정도 확인되었다. 특히 송의 일반 표류민 송환에서 가장 기본적인 조처는 '存撫(存問) 및 식량 지급→㉵渡海糧 지급→㉶俟便에 의한 송환'이었다. 다만 '표착에서 송환까지'의 절차에서 그 결과를 중앙에 보고하는 형식이 빠져 있었다. 이것은 표류민에 대한 송환조처가 법규화된 이상 그 결과를 중앙에 보고할 필요가 없었고, 게다가 표류민의 송환이 지방으로 위임되었음을 말해준다.

고려의 표류민에 대한 송환 조처에서도 '㉮선박의 표착' 이후의 단계인 '㉯해당관청(市舶司)에 보고'에서 보고를 받는 해당관청과 상부에 보고하는 관청은 초기에는 東南海船兵都部署였지만, 13세기 중기 이후는 金州防禦官와 慶尙道按察使라는 이원적인 체계로 운영되었다. 이러

한 이원적인 체계에서 고려도 송과 유사한 표류민 송환절차가 시행되었다. 그 중에서도 표류민에 대한 식량지급과 송환은 송과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적인 규정이었다.

다만 고려에서는 표류민을 송환할 때 '㉮候便에 의한 송환' 방식을 취하지 않고 지방관이 직접 護送하였고, 표류민의 송환을 각 지역의 지방장관이 분담할 뿐만 아니라 金州防禦官과 慶尙道按察使가 분담하는 이원적인 구조였으며, 표류민 송환 조처가 중앙의 명령에 의해 시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점들은 고려만의 특징이었다.

일본에 표착한 일반 표류민의 송환조처에서 초기의 담당기관은 大宰府였다. 이 대재부시기 일본에서도 표류민에 대한 식량지급과 송환은 표류민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조처였다. 그러나 일본에서 표류민 송환은 종래 중앙에서 주도하였던 것이 1031년을 기점으로 지방으로 위임되었다. 이후 표류민의 송환은 對馬島官이 주도하였고, 또 직접 押送하였다. 이 가운데 전자의 지방위임제도는 송과 유사하고, 후자의 압송은 고려와 유사하였다.

4. 송환체제에 보이는 동아시아 교통권의 구조와 특성

10~13세기 동아시아를 구성하는 송·고려·일본의 송환지는 明州(송: 초기에는 登州와 명주 이원체제, 1074년 이후 명주단일체제)·金州단일체제(고려)·대마도단일체제(일본)로 되어 있었다. 게다가 이들 송환지는 당시 각국에서 대외교섭창구의 역할도 하였다. 그리고 이 시기 계절별 표류민의 표착과 송환 시기는 송·고려·일본의 항해시기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일치하였다.

10~13세기 표류민의 표착과 송환 시기는, 使臣과 商人을 포함한 일반민의 표착은 9월이 다수를 차지하지만, 송환의 경우 宋에서 高麗로의 송환은 5월~8월 사이, 일본에서 고려로의 송환은 7월~9월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는 高麗·宋·日本의 계절별 항해시기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이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이 시기 동아시아를 구성하는 송・고려・일본의 송환지는 明州(초기에는 登州와 명주 이원체제, 1074년 이후 명주단일체제)・金州단일체제(고려)・對馬島단일체제(일본)로 되어 있었다. 이들 송환지는 당시 각각 대외교섭창구의 역할도 겸하였다.

표류민의 표착지·송환지와 출신지에 보이는 송·고려·일본 간에 이용된 항로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먼저 송·고려 간의 항로이다. 고려・일본 표류민의 송에서의 표착지는 동남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는 이 시기 한반도와 중국을 연결하는 해상교역로(航路) 가운데 공식 使行路 이외에 남방(남중국)항로(明州—黃海—黑山道—西海岸—禮成江—急水門—碧瀾渡—開京)가 적극 이용되었음을 말해준다. 그리고 동남지역에 표착한 표류민의 송환지는 1074년을 기점으로 登州에서 明州로 단일화되었다. 그런데 1074년 이전(1020년)에도 송환지가 明州인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남방항로는 그 이전부터 이미 활발히 이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요컨대 당시 송과 고려에서 전개된 표류민의 송환 루트는 남방항로와 일치하였다.

다음은 고려와 일본 간의 교통로이다. 일본에 표착한 고려인은 대부분 대마도에서 금주로 송환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고려·일본 간의 교통로는 금주—대마도로 연결되는 항로가 예상된다. 이것을 일본에 표착한 표류민의 대부분이 耽羅民이라는 점과 아울러 생각하면, 당시 고려・일본 간의 항로는 耽羅—金州—對馬島라는 루트가 형성되어 있었다.

이 논문은 2011년 5월 31일에 투고 되어,
2011년 6월 8일부터 6월 26일까지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2011년 6월 29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續資治通鑑長編』
『舊五代史』
『唐會要』
『宋史』
『宋會要輯稿』
『高麗史』
趙家齊, 『宋代交通管理制度研究』, 河南大學出版社, 2002.
楊渭生, 『宋麗關係史研究』, 杭州大學出版社, 1997.
김기섭 외, 『일본 고중세 문헌 속의 한일관계사료집성』, 혜안, 2005.
李薰, 『朝鮮後期 漂流民과 韓日關係』, 國學資料院, 2000.
張東翼, 『宋代麗史資料集錄』,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張東翼, 『日本古中世高麗資料研究』,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장동익 지음, 『高麗時代 對外關係 綜合年表』, 동북아역사재단, 2009.
金庠基, 「高麗前期의 海上活動과 文物의 交流」, 『東方史論叢』, 서울대 출판부, 1986.
金渭顯, 「麗宋關係와 그 航路考」, 『關大論文集』 6, 1978.
金澈雄, 「高麗와 宋의 海上交易路와 交易港」, 『中國史研究』 28, 2004.
金好鍾, 「東南海都府署의 設置와 그 機能-金州本營을 中心으로-」, 『民族文化論叢』 20, 1999.
朴昔順, 「大宰府의 대외관련 업무 사례연구」, 『歷史學報』 180, 2003.
朴玉杰, 「高麗 來航 宋商人과 麗·宋의 貿易政策」, 『大東文化研究』 32, 1977.
朴容雲, 「高麗·宋 交聘의 목적과 使節에 대한 考察(上)」, 『韓國學報』 81, 1995, 1993.

朴元鎬,「明代 朝鮮 漂流民의 送還節次와 情報傳達」,『明淸史硏究』24, 2003.
裵淑姬,「宋代 東亞 海域上 漂流民의 發生과 送還」,『中國史硏究』65, 2010.
申採湜,「唐末・五代의 東南沿海地域과 韓半島의 海上交涉」,『東國史學』4, 2000.
劉序楓,「淸代 中國의 外國人漂流民의 救助와 送還에 대하여—朝鮮人과 日本人의 사례를 중심으로—」,『東北亞歷史論叢』, 28 東北亞歷史財團, 2010.
이승민,「고려전・중기 동북아시아 해역에서의 표류민 송환과 국제관계」,『가톨릭대석사학위논문』, 2007
張東翼,「14世紀의 高麗와 日本의 接觸과 交流」,『大丘史學』100, 2010.
전영섭,「10~13세기 동아시아 교역시스템의 추이와 海商 정책-宋・高麗・日本의 海商 관리규정 비교-」,『역사와 세계』36, 2009.
전영섭,「10~13세기 동아시아교역권의 성립과 海商활동-海港都市・國家의 拮抗관계와 관련하여-」,『해항도시문화교섭학』3, 2010.
藤田豊八,「宋代の市舶使及び市舶條例」,『東西交涉史の硏究・南海篇』, 講書院, 1932.
山內晉次,「古代における朝鮮半島漂流民の送還をめぐって」,『歷史科學』122, 1990.
姚禮群,「宋代明州對高麗漂流民的救援措施」,『韓國硏究』2, 1995.
武田幸男 編譯,『高麗史日本傳(上)』, 岩波書店, 2005.
森克己,「日·宋と高麗との私獻貿易」,『朝鮮學報』14, 1959.
王文楚,「兩宋和高麗海上航路初探」,『文史』12, 1991.
王興文,「略論宋代市舶制度」,『白城師範學院學報』17-1, 2003.
張晉藩 主編,『中國法制史』5卷 宋, 法律出版社, 1999.

Abstract

From 10 until 13th century drift one the repatriation setup which pushes structure and quality of the East Asia traffic circle which tries to lead

Jun, Young-Seop

This dissertation with the various characteristic middle drift one actual condition which is developed from 10~13 centurial East Asia trades circle the structure and a quality of the traffic circle which is formed analyzed a repatriation setup and this time examined. The drift one occurrence and the repatriation this timely East Asia trade setup and is very deep relationship. Consequently about this problem investigation there is being a possibility of seeking the entity about formation of the sea network, a possibility of knowing the composition of the people who advances toward the ocean from the various nations and to observe there is also these drift one control process and namely repatriation setup leads is a research territory which is important from the point which is the possibility which even until structure and quality of difference of foreign trade management of the various nations and further East Asia traffic circle tries.

To the drift one repatriation setup which occurs consequently

from this timely East Asia merchant ocean with the stage major role, under these leading this week when is a southeast route —Kumju(金州)—Tamna(耽羅)—Daemado(對馬島) and the western sea route —Naju(羅州)—Kunsan(群山)—Daemado(對馬島)— was joined together. And Naju which from this setup reaches to the cluster home country and when considers the point which repatriates the line burning, drifting where also song is developed from East Asia to close relation to the repatriation setup which pushes was. This timely East Asia drifting the repatriation setup which pushes southeast route —Myengju(明州)—Kumju(金州)—Tamna(耽羅)—Daemado(對馬島), the western sea route Myengju(明州)—Naju(羅州)·Gunsan(群山)—Daemado(對馬島)— the method which is formed. And to the area where is located in this route almost the most higher officer existing the possibility is, was the key point of the traffic where the commerce advances. And to the area where is located in this route almost the most higher officer existing the possibility is, was the key point of the traffic where the commerce advances. Drifting which from like this point is developed from 10~13 centurial East Asia the repatriation setup which pushes 10th century after that hour doctor setup which is formed (business reverse setup = civil trade system in the merchant center ocean with the stage) comes is to be a structure which is identical.

Key Words : drift one, repatriation setup, the Ease Asia traffic circle, Myengju(明州), Kumju(金州), Daemado(對馬島)